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

2020. 5.

감 사 원

<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1
II. 기관 간 업무협조 추진체계 및 현황	3
III. 감사결과	5
1. 감사결과 총괄	5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7
(1) 지중송전설비의 도시공원 등 점용 관련 법령 개정 필요[통보(시정완료)] · 8	
(2)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법령 개정 필요(법령상 개선) · 15	
(3) 공매업무 관련 주민등록 전입세대 정보제공 범위 확대 필요(통보) · 23	
(4) 학교의 무단점유지에 대한 업무협조 필요(통보) · 32	
(5) 기관 간 정보연계로 축산물 유통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통보(모범사례)] · 41	
(6) 가스관 이설비용 최소화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와의 적극적 협의로 예산 절감 등에 기여[통보(모범사례)] · 49	

(7)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 간 감염병 환자 공유정보 활용 미흡(통보)	53
(8) 공기업 등에 대한 계약 특례 승인 처리기준 마련 필요(통보)	58
(9)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업무 협의 부적정(주의)	64
(10) 울산시 하천기본계획(척과천) 관련 협의 부적정(통보)	68
(11) 직권 용도폐지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통보)	76
(12) 발굴문화재 공고 지연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통보)	91
(13)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회수 및 보조금 환수 관련 업무 부적정(통보) ·	105
(14) 엑스포지하차도 개통 지연 부적정(통보)	111
(15) 행정협업과제의 발굴·지원 및 행정협업시스템의 점검·관리 부적정(주의) ·	115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19년 3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4대 추진 방향으로 하여 17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도 제정¹⁾·시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해져 하나의 정책·사업에도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경우가 많아 ‘공무원 개인이나 개별 행정기관 차원’의 적극행정을 넘어서는 ‘행정기관 간’ 협조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례를 확인·점검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기관 간 업무협조가 어려워 정책·사업 등의 추진이 지연된 사유와 경위를 파악하여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개선대안 마련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표 1]과 같이 점검 분야별로 구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1)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9. 8. 6. 제정

[표 1] 분야별 감사 중점

점검 분야	감사 중점
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응의 적정성 검토 ■ 기관 간 협의·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기관 간 비용 부담 등 이건의 조율 가능성 검토
기관 간 업무협조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간 업무협조 관련 지원 체계의 적정성 검토
기관 간 업무협조 모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기관 간 업무협조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예산 절감 등 효과 달성 여부 검토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19. 8. 26.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면서 국회 논의사항·언론보도·각 행정기관이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등을 수집·분석하고,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사례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의 사전검토과정을 거쳐 같은 해 11. 18.부터 12. 13.까지 20일간 감사인원 12명이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기관 간 업무협조가 가능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9. 12. 23.부터 2020. 1. 8.까지 질문서를 발부하여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으로 감사결과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답변서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0. 5. 14.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기관 간 업무협조 추진체계 및 현황²⁾

기관 간 업무협조를 위해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는 [표 2]와 같이 각각 정책조정·행정협업³⁾·공공기관 혁신 및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각 부처의 업무협조 관련 업무 개요

구분	근거법령	대상	내용
국무조정실	「정부조직법」 등	중앙행정기관	부처 합동대책 수립·기관 간 의견 조정 등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행정협업과제 발굴 및 지원 행정기관의 행정협업과제 수행 지원 등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과제 점검·관리 등

자료: 관련 법령 등 재구성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제20조) 등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면서 부처 간의 조정이나 협업이 필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국무·차관회의나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표 3]과 같이 최근 3년간(2017년 5월~2019년 8월) 105건의 정책·사업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거나 부처 간의 의견 등을 조정하였다.

[표 3] 최근 3년간(2017년 5월~2019년 8월) 국무조정실의 정책·사업 조정 현황

(단위: 건)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105	27	45	33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 2)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장조사 등의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 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1조)에서는 “행정협업”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표 4]와 같이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행정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행정협업시스템(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업과제 블로그⁴⁾·기관 간 메모 보고⁵⁾·공동결재⁶⁾·G드라이브⁷⁾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활용실적을 점검·관리하는 등 행정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표 4] 행정안전부의 행정협업 관련 주요 업무

업무명	근거 조항	내용
행정협업과제 발굴	제43조 제1항	각 기관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에 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
행정협업과제 지원	제44조 제3항, 제4항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 행정협업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
행정협업시스템 구축·운영	제46조의2 제1항	공동작업 및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행정협업시스템(온나라시스템) 구축·운영
행정협업시스템 점검·관리	제46조의3 제2항	각 기관의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태 점검·평가 및 지원

자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하면서 기관 간 협업 및 공공부문의 시민참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표 5]와 같이 혁신·협업·시민참여과제를 2013년부터 선정하여 점검·관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차등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표 5] 혁신·협업·시민참여과제 우수 사례 현황

(단위: 건)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27	15	19	23	25	20	25

자료: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자료 재구성

- 4) 행정협업과제 추진 시 과제 추진 현황·자료 공유·의견 수렴이 편리하게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 5) 긴급한 현황 보고,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동시에 여러 기관, 여러 사용자에게 메모 형태로 간단하게 전자 보고가 가능
- 6) 복수의 기관장이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공동으로 결재할 수 있는 기능
- 7) 정책·업무자료를 클라우드에 통합·저장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기기로 공유·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장 서비스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6]과 같이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 17건과 모범사례 2건 등 총 19건이 확인되었다.

[표 6] 지적사항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법령상 개선	주의	통보	통보 (시정완료)	통보 (모범사례)
건수	19	1	2	13	1	2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과 모범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 사례 분야

<유형 ①> 다른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에 소극적 대응

- 국토교통부는 지하에 설치되는 전력구와 송전선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인 공동구와 유사하고, 점용허가 대상인 변전소와 함께 설치되므로 점용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 2006년 점용허가 대상으로 회신하였다가 2018년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변경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분쟁 유발
- 법무부는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국토교통부 소관)이 모두 적용되므로 양 법률의 기산점을 모순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는데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규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둘러싼 분쟁 증가 우려

<유형 ②> 기관 간 협의를 소홀히 한 채 정책·사업 추진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제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학교용지가 시·도교육청으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으로 313개 학교가 17만 ㎡를 무단점유하고 있고
 -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데도 공유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개선방안을 미마련
-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수재활용제품을 인증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고, 법령에서 불허하는 제품을 인증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폐석산 복구용 유기성 오니 고체화 제품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요청에 대해 환경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제품을 인증

<유형 ③> 기관 간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추진 등 지연

- 국립중앙과학관과 대전마케팅공사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엑스포지하차도를 인계받아 관리하면서 대전마케팅공사가 국립중앙과학관에 개통을 요청하자
 - 국립중앙과학관은 도로 관리 경험이 없다는 사유로 대전광역시가 관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는 토지를 기부채납해달라고 하는 등 이견이 발생하여 개통이 지연

(나) 기관 간 업무협조 지원체계 분야

- 행정안전부는 행정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하겠다고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610건을 제출받은 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1건도 선정하지 않는 등 행정협업과제 발굴·지원이 미흡
 - 또한 각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16개 부처가 등록한 행정협업과제가 총 31건에 불과한데도 점검·평가 등이 미흡

(다) 기관 간 업무협조 모범사례 분야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등급판정확인서 등 증명서 9종의 진위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축산 관련 인증정보 보유기관과 협의하여 9개 기관·11종의 인증정보에 대한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증명서 발급·조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국민편의증진 기대

이와 같이 확인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20. 5. 4. 지하에 설치·운영되는 전력구와 송전선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이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과 모순되지 않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령상 개선요구하는 등 총 19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별첨

감 사 원

통보(시정완료)

제 목 지중송전설비의 도시공원 등 점용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소 관 기 관 국토교통부

조 치 기 관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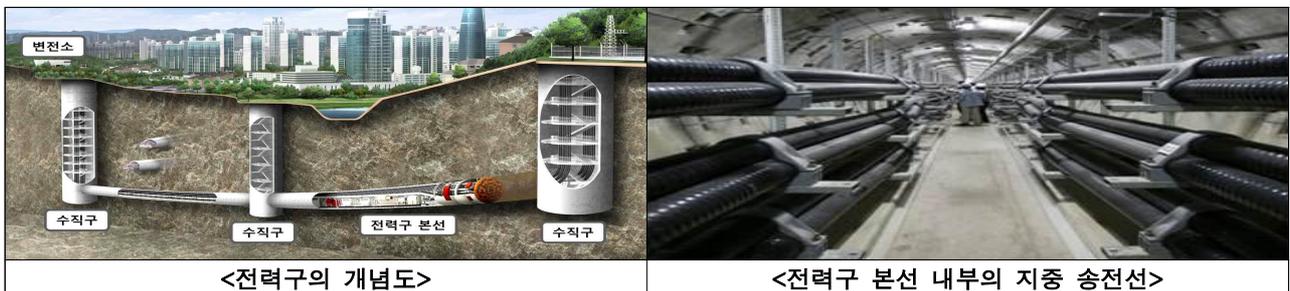
내 용

1. 업무 개요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43조 등에서 도시공원과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점용허가 대상과 점용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송전사업자)로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지하에 전력구(電力溝)¹⁾와 송전선²⁾(이하 “지중(地中) 송전선”이라 한다)을 [그림]과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림] 지하에 설치되는 전력구 및 지중 송전선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1) 케이블 및 부속재를 수용하고, 케이블의 접속 공간을 겸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
- 2)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다른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 전력을 수송 또는 연계하기 위한 전선로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원녹지법 제24조 제3항 및 제3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제2호, 제17호 및 제43조 제1호, 제7호에는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관³⁾), 공동구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⁴⁾은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공동구를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 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전력구는 전기공급설비인 지중 송전선을 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공동구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 제17호 및 제43조 제7호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변전소와 발전소 또는 변전소와 다른 변전소를 연결하는 전선인 지중 송전선도 변전소와 함께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및 제43조 제1호 등에서 변전소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중 송전선도 변전소와 같이 점용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 건설교통부는 2006. 11. 24. 한국전력공사에 전력구는 공동구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한 바 있고, 국토교통부는 2016. 8. 2. 전력구와 지중 송전선은 전기 관련 시설 또는 전기통신관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점용허가 대상이라고 민원회신한 바도 있다.

3) 전기통신관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

4) 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전선과 전기통신설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고, 변전소와 공동구는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

국토교통부에서 지중송전설비가 점용허가 대상이라고 회신한 내용

- **(질의 회신)** 구 건설교통부는 2006. 10. 13. 지중 송전선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등에 전주·전선·변전소 등이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별표 1]에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유로 지중송전선은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국전력공사에 회신
 - 구 건설교통부는 2006. 11. 24. 전력구는 녹지 지하에 매설되는 전선의 설치·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별표 1]의 공동구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국전력공사에 회신
- **(민원 회신)** 국토교통부는 2016. 8. 2. 전력구와 지중 송전선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제2호 [별표 1] 제1호에 따른 전기 관련 시설 또는 전기통신관에 해당하거나 위 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판단되므로 점용허가 대상이라고 국민신문고 민원에 회신

그리고 구 건설교통부와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도시공원과 녹지에 전력구·지중 송전선(이하 “지중송전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 11월 감사일을 기준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지중송전설비는 [표 1]과 같이 258개소이다.

[표 1] 점용허가를 받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중송전설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점용허가 종류	개소 수
전력구	녹지 점용허가	34
	도시공원 점용허가	46
	녹지 및 도시공원 점용허가	2
	소계	82
지중 송전선	녹지 점용허가	81
	도시공원 점용허가	82
	녹지 및 도시공원 점용허가	13
	소계	176
합계		258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지중송전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본 기존의 해석을 변경할 때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하고, 기존 해석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운영 중인 지중송전설비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중송전설비가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계속 질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허가 여부를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에는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업무처리가 되도록 지중송전설비의 점용허가 대상 여부를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중송전설비가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해석을 통해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당초에는 점용허가 대상으로 보았다가 2018. 6. 27. 안산시가 경기도를 통해 지중송전설비가 점용허가 대상인지를 질의하자 2018. 7. 24. 기존의 회신(2006년, 2016년) 내용과 다르게 지중송전설비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높은 전력으로 승압하여 보내기 위한 송전설비로 위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전주·전선 등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중송전설비가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내용

- 안산시가 2018. 6. 2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원에 설치되는 345kV 지중송전설비가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경기도를 통해 질의
 - 국토교통부는 2018. 7. 24. 지중송전설비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높은 전력으로 승압하여 보내기 위한 송전설비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의 전주·전선 등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
 -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8. 7. 25. 지중송전설비는 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발송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2019. 7. 16. 국토교통부에 지중송전설비가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전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의 기존 회신(2006년, 2016년)과 같이 점용허가 대상인 공동구와 유사한 시설(제22조 제17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19. 8. 26. 전력구가 전기공급 설비에 해당한다면 공동구와 유사한 시설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송전선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된 전선

과 그 목적(전선은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중 송전선과 목적이 다름)이 다르고, 위 시행령 제26조 [별표 2] 제5호에서 전선과 송전선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전선과 달리 송전선은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의2에 따르면 ‘전선로’를 발전소·변전소 등과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 간의 전선로로 정의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송전선로’를 변전소 상호 간, 변전소와 발전소 간, 발전소 상호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선은 송전선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⁵⁾으로 보아 지중 송전선도 점용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설령, 국토교통부의 해석대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서 전선과 송전선을 구분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선과 지중 송전선은 모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유사한 기능이 있으므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 제17호 및 제43조 제7호에 따라 송전선을 전선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로 보아 점용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김포시가 국토교통부의 변경된 해석에 따라 2019. 4. 16. ‘154kV 왕길-양촌’ 지중송전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인 전주·전선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점용허가 연장을 거부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9. 9. 30. 전력구는 지하에 설치되어 도시공원 등의 이용과 기능을 저해하는 정도가 공동구 등과 유사하므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와 제7호에 따라 공동구 등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이라는 사유로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는 발전소·변전소·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전기수용설비 상호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를 배전선로라 정의하고 있는데, 전선은 송전선과 배전선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재결을 받았고, 부천시의 ‘수도권 서부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ㄷ구간)’
 점용허가 불허가 처분(2018. 7. 30.)에 대해서도 2018. 11. 12. 취소재결을 받는 등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해석 변경이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해석 변경으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허가도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의 변경된 해석을 따를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지중송전설비 258개소는 향후 점용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
 어 시설 이전 등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해 다
 음 사례와 같이 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이 증가할 우려도 있었다.

점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이 증가하는 사례

- **(사업비 증가)** 경기도 평택시에 설계·시공 중인 “ㄹ 전력구 공사”(사업기간: 2018~2021년, 사업비: 103억 원)
 는 점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도시공원 우회로 송전선이 687m 증가하게 되어 사업비가 약 26억 원 증가
- **(사업기간 증가)** 경기도 시흥시에 설계·시공 중인 “광석분기 전력구 공사”(사업기간: 2019~2023년, 사업비: 904억 원)
 는 점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도시공원에 수직구 1개소를 설치할 수 없어 수직구 간 양방향 굴착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터널 굴착 기간이 증가하여 사업기간이 약 19개월 증가

한편, 국토교통부는 점용허가 관련 해석을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다른 시·
 도에는 통보하지 않고 경기도에만 통보하여 [표 2]와 같이 경기도 일부 기초자
 치단체⁶⁾(고양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만 현재 설계·시공 중인 지중송전설비의
 점용허가를 거부하고 있고,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허가를 하고 있는
 등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점용허가 대상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해석만으로 결
 정하고 있는데 그 해석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해석 변경 이후에는 이를
 알리는 조치도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6) 2019년 11월 기준으로 부천시 등 경기도 관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지중송전설비의 공원녹지법상 점용허가
 를 하지 않고 있고, 다른 시·도는 점용허가를 하고 있음

[표 2] 현재 설계·시공 중인 지중송전설비에 대한 점용허가 거부 현황

연번	명칭	대상 지방자치단체
1	-	고양시
2	-	고양시
3	-	시흥시
4	-	부천시
5	-	안산시, 시흥시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며 전력구 및 지중 송전선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20. 5. 4. 이하에 설치·운영되는 전력구와 송전선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감 사 원

법령상 개선요구

제 목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소 관 기 관 법무부

조 치 기 관 법무부

내 용

1. 업무 개요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기간을 규율하는 등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과 관련된 권리관계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¹⁾에게 인도한 날”(통상적으로 등기 후 점유개시일을 말함)부터 그 존속기간을 기산하는데,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집합건물법이 「공동주택관리법」보다 구분소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²⁾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관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

1)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자(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 등)

2) 2015. 8. 11.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삭제되어 집합건물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만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존재

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통상적으로 임대차 개시일을 말함)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산하도록 집합건물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조항이 신설(2012. 12. 18., 시행일: 2013. 6. 19.)되기 전의 판례³⁾는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의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통상 임대차 개시일)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집합건물법을 적용한 하급심 판결⁴⁾에서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후 공동주택을 실제 소유하게 되는 자를 구분소유자로 해석하는 등 [표 1]과 같이 5년에서 10년의 임대기간⁵⁾만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이 미루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표 1]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신설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비교

구분		일반분양 공동주택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
집합건물법 개정 전	기산점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하자담보책임기간	입주 후 최대 10년	임대차 개시 후 최대 10년
집합건물법 개정 후	기산점	구분소유자(수분양자)에게 인도한 날	구분소유자(수분양자)에게 인도한 날
	하자담보책임기간	입주 후 최대 10년	임대기간(5~10년) 종료 후 최대 10년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등 재구성

- 3) 대법원은 구 집합건물법 제9조와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에 비추어 ‘인도’는 인도의 원인관계를 불문하고 ‘건축 후 최초 인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닌 임대에 의하여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2012. 5. 10. 선고 2011다66610)한 바 있음
- 4) 광주지방법원은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의 경우 ‘구분소유자’를 해석함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양전환 후 전유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구분소유자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결(2018. 8. 23. 선고 2016가합53857)하여 확정(2018. 9. 13.)된 바 있음
-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임대기간이 5년에서 10년인 경우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신설 당시(2012. 12. 18.)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이 없었으나 2017. 4. 18.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은 임차인이 입주하여 주택을 사용하다가 일정 기간 후 분양전환되어 계속 사용한다는 점에서 분양을 받은 자가 입주하여 계속 주택을 사용하는 일반분양 공동주택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르게 볼 사유가 크지 않다.

반면, 위 하급심 판결과 같이 현재의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대폭 연장(인도 후 최대 10년 → 인도 후 최대 20년) 된다고 하면 시공사는 임차인이 장기간 사용한 건물에 대해 신규 분양한 건물과 동일한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별표 1] “5년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 현황”과 같이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소송이다 다수(19건, 총 8,460세대 관련)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차이가 있으면 관련 분쟁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이 「공동주택관리법」과 모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법무부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조항을 신설⁶⁾한 후에 2019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

6)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조항이 신설된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2. 9. 4. 제출, 의안번호 1901553)은 정부 제출 의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이에 [표 2]와 같이 2013. 6. 19. 개정·시행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된 소송 3건이 제기(1건은 종결, 2건은 진행 중)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표 2]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적용된 5년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 현황

연번	단지명	세대수	심급별 사건번호	원고	피고	종결 여부
1	-	263	광주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광주고등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대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진행 중
2	-	713	광주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광주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소송비용확정 인용
3	-	1,053	광주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광주고등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진행 중

주: 2019. 12. 5. 기준, 표의 피고(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의미함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게다가, 임대기간이 5년보다 장기인 10년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의 경우에도 [별표 2] “10년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의 분양 예정 현황”과 같이 2019년에 분양전환 시기가 최초 도래한 후에 앞으로 10년간 총 74,574세대(117개 단지)가 분양전환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분쟁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하자보수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법무부장관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을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과 모순되지 않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법령상 개선)

[별표 1]

5년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 현황^{주)}

(단위: 세대)

연번	단지명	세대수	심급별 사건번호	원고	피고	종결 여부
합계	19개 단지	8,460				
1	-	1,03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서울고등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항소 기각
			대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심리불속행 기각
2	-	291	광주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광주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소송비용확정 인용
3	-	25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소송비용확정 인용
4	-	1,0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서울고등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항소 기각
5	-	2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서울고등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6	-	253	인천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서울고등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항소 기각
7	-	263	광주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광주고등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대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진행 중
8	-	370	광주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이송
			광주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진행 중
9	-	13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대전고등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강제조정
10	-	63	서울중앙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이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진행 중
11	-	713	광주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광주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소송비용확정 인용
12	-	1,053	광주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광주고등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진행 중
13	-	320	대구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대구고등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진행 중
14	-	673	인천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진행 중
15	-	1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서울고등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진행 중
16	-	825	광주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진행 중
17	-	434	인천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진행 중
18	-	86	청주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종결(원고 일부승소)
			대전고등법원(청주) -	입주자대표회의	LH	진행 중
19	-	316	인천지방법원 -	입주자대표회의	LH	진행 중

주: 2019. 12. 5. 기준, 표의 피고(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의미함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10년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주택의 분양 예정 현황

(단위: 세대)

분양전환시기(연도별)	연도별 분양전환 세대수	해당 단지명	단지별 분양전환 세대수
합 계		117개 단지	74,574
2019년	3,815	-	428
		-	504
		-	510
		-	870
		-	660
		-	503
		-	340
2020년	2,395	-	849
		-	491
		-	809
		-	246
2021년	1,760	-	412
		-	700
		-	648
2022년	5,061	-	1,352
		-	1,318
		-	1,029
		-	214
		-	446
		-	322
		-	156
		-	224
2023년	221	-	130
		-	22
		-	47
		-	22
2024년	10,680	-	701
		-	280
		-	1,702
		-	202
		-	637
		-	478
		-	236
		-	258
		-	394
		-	672
		-	96
-	261		

분양전환시기(연도별)	연도별 분양전환 세대수	해당 단지명	단지별 분양전환 세대수
2024년	10,680	-	821
		-	224
		-	865
		-	1,029
		-	448
		-	600
		-	680
		-	96
2025년	9,539	-	136
		-	962
		-	820
		-	749
		-	178
		-	919
		-	541
		-	783
		-	488
		-	419
		-	275
		-	728
		-	443
		-	1,584
		-	376
2026년	8,330	-	138
		-	380
		-	340
		-	491
		-	344
		-	371
		-	540
		-	742
		-	468
		-	791
		-	532
		-	492
		-	575
		-	345
		-	765
-	342		
-	812		

분양전환시기(연도별)	연도별 분양전환 세대수	해당 단지명	단지별 분양전환 세대수
2027년	12,293	-	1,444
		-	917
		-	756
		-	652
		-	198
		-	924
		-	632
		-	944
		-	913
		-	727
		-	1,022
		-	1,763
		-	1,401
2028년	19,512	-	1,164
		-	922
		-	1,228
		-	413
		-	1,362
		-	1,300
		-	963
		-	876
		-	882
		-	595
		-	560
		-	996
		-	822
		-	404
		-	686
		-	678
		-	992
		-	1,594
		-	904
		-	528
-	481		
-	234		
-	363		
-	565		
2029년	968	-	688
		-	280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공매업무 관련 주민등록 전입세대 정보제공 범위 확대 필요

소 관 기 관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제2조 및 제3조 등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¹⁾을 통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르면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해 행정기관 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는 행정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

1)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해 행정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제도

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압류한 부동산 등을 공매²⁾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르면 공사³⁾가 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공매대상 재산의 점유관계, 재산의 현상(現狀)을 조사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건물에 출입하거나 잠긴 문을 여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68조 및 제68조의3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공매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매재산에 대해서 그 점유자,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 공매 시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9에 따르면 공사가 공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 정보 등⁴⁾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는

2) 최근 5년간(2015. 1. 1.~2019. 11. 30. 현재) 국세 체납에 대한 공매 대상 부동산 물건 수는 총 84,389건, 그중 주택 등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필요한 물건은 총 28,959건임

3) 「국세징수법」 제61조 제6항에 따르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으로 분다고 규정

4) 법무부(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안전부(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 전입세대), 국토교통부[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해양수산부(선박원부), 대법원(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5개 기관이 보유한 14개 정보

공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매 사실을 임차인 등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임차인 등에게 질문, 문서 제시 등을 요구하거나 행정기관이 보유 중인 주민등록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공매 후 금전 배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⁵⁾하는 한편, 국가가 공매대상 부동산 등의 권리관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강제력에 의해 원활하게 국세를 체납한 자의 압류재산을 매각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사가 읍·면·동 등 주민등록표 교부기관(이하 “주민센터”라 한다)을 직접 방문할 경우 익명 처리되지 않은 주민등록 전입세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⁶⁾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공사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이를 공사가 공매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 처리되지 않은 성명(姓名)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18년 3월 공사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하자 같은 해 7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한 전례가 없고 전산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가 2019년 1월에는 전산 개발 완료 후 이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5) 「국세징수법」 제68조에는 공사가 공매공고를 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매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진 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제68조의2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사람은 세무서장에게 금전의 배분요구 등을 하도록 규정

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사가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하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성명을 제공하도록 해석하여 운영

이후 2019. 9. 3. 행정안전부는 공사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세대주 등의 성명 대신 성(姓)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고, 이에 같은 해 9. 24. 공사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9를 근거로 세대주의 이름까지 제공해달라고 다시 요청하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임차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유자·임차인 등 직접 관련자가 아닌 경매참가자 등 제3자에게는 성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름 제공을 거부하였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9. 11. 18.~12. 13.) 중 행정안전부에 이름을 제외한 성만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 사유를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사유 외에도 공사가 전국 어느 주민센터를 방문하더라도 성명을 열람할 수 있고, 공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매 대상 재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사유를 들고 있었다. 또한 공사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열람 필요성에 대해 사전적 판단이 가능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우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한번 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하면 다른 기관도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입법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성만 제공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공사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임차인 등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성명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지 않아 성만 제공한

다는 입장이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성명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사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정보이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9에서 공사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확인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성명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장대로라면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사에 어떤 경우라도 전입세대 성명을 제공하면 안 되지만, 공사가 공매 대상 소재지 관할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성명을 제공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를 제외한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대법원은 모두 공사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공매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활용 현황”과 같이 행정정보를 제공하면서 성명을 익명처리하지 않고 제공⁷⁾하고 있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경매참가자, 신용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회사 등에는 전입세대 성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성만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공사는 국가(세무서장)를 대행하여 공무상 목적으로 전입세대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경매참가자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도 공사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 제14조가 아니라 국가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전입세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제6조를 근거로 성명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위 제14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7) 대법원은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정보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의 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에는 국세 체납자뿐 아니라 해당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자 등 해당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실명을 제공하고 있음. 반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경우 익명처리되지 않은 전체 성명을 제공하면서도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경우 성만 표시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정보를 열람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성명 제공하
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셋째,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를 방문하더라도 성명을 열람할 수
있고, 공사가 공매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해야 하므로 행정정보 공
동이용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성명을 받게
되면 공사가 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업무 효율성이 증
가하며 공사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원활한 공매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
동이용을 통해 전입세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2018. 2. 13. 「국세징수법 시행
령」 제68조의9를 신설하기까지 했는데 공매업무를 하지 않는 행정안전부가 공사
의 필요성 정도를 임의로 판단하여 성명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
욱이 2019. 1. 18. 행정안전부도 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하면서 압류재
산 공매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지자체 업무 경감 등이 기대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

넷째, 행정안전부는 공사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열람
필요성에 대한 사전적 판단이 가능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나, 「전자정부법」 제3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은 공동이용을 관리할 사람, 정보에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등을
지정·운영하고,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를 주기적으로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제장

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30조 제5항에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면서 제37조 및 제39조에서는 자료를 목적 외 사용한 자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까지 두고 있으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제공 시 통제가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한번 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하면 다른 기관도 같은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입법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성만 제공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는 공사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전입세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아무런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⁸⁾ 2018. 2. 13.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근거해서 공사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막연히 최근 입법추세와 다른 기관의 확대요구를 우려하여 성명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사가 공매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성명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등의 이유로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공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도 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공익 목적이 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정보가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될 수는 없고, 2013. 12. 17.

8)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에 의견제시를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개정안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 시행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매참가자 등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경우 성만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 입법추세이며, 공매 물건에 대한 임차인 존재 여부는 전입세대 열람만이 아닌 현황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성명이 포함된 전입세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를 근거로 공사가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성명이 모두 표시되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공사의 열람 권한 및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단순히 교부기관 직접 방문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열람 방법의 차이만으로 공사의 열람 권한, 정보제공 범위 및 적용 규정 등 판단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3항”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공사는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정보를 취득하고 있어 경매참가자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와는 다른 점, 행정안전부도 공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경우 압류재산 공매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지자체 업무 경감 등이 기대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의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9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공매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명(姓名)이 포함된 주민등록 전입세대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공매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활용 현황

제공기관	행정정보(15종)	활용 목적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매절차상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각종 통지서를 적기에 송달할 목적으로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함 ⇒ 최종주소지 확인
	주민등록 전입세대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매절차상 중요한 이해관계인인 임차인은 공부상 별도 표시가 없어 이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전입세대주, 대항력 있는 임차인 확인
대법원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매절차상 ① 공매재산의 압류 유무를 확인하고, ② 각종 통지서 송달을 위한 소유자(채납자), 이해관계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③ 공매실익 유무 판단을 위한 권리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④ 공매재산의 지번, 지목, 수량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법인등기사항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인 법인에 각종 통지서를 적기에 송달하기 위한 최종 주소지 및 대표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함 ⇒ 법인 최종 주소지 확인, 대표자 인적사항 확인
법무부	출입국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 출국 및 입국사실을 확인하여 최종 소재를 파악하기 위함 ⇒ 이해관계인의 소재 파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각종 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등록지를 확인하기 위함 ⇒ 송달 등록지 파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재외동포가 국내 거소지를 신고한 경우 각종 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거소지를 확인하기 위함 ⇒ 송달 거소지 파악
국토교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매대상 물건인 토지, 임야, 건물의 소재·지번·지목·수량과 소유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함 ⇒ 공매물건의 소재, 지번, 지목, 수량 일치여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매절차상 ① 공매재산의 압류 유무를 확인하고, ② 각종 통지서 송달을 위한 소유자(채납자), 이해관계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③ 공매실익 유무 판단을 위한 권리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④ 공매재산의 차명, 차중, 차대번호 등을 확인하기 위함
해양수산부	선박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운관청이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등기를 마친 선박을 등록한 경우 소유자 인적사항, 선적항, 총톤수 등을 확인하기 위함 ⇒ 소유자 인적사항, 선적항, 총톤수 등 확인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각종 통지서를 적기에 송달하기 위한 체류국 내 주소 및 거소를 확인하기 위함 ⇒ 송달 주소·거소지 파악

주: 1.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경우 성(姓)만 제공받음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9에 명시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는 아니나, 2017. 9.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보 취득 권한을 받고, 이후 2019. 8. 20.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정보를 취득 및 활용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학교의 무단점유지에 대한 업무협조 필요

소 관 기 관 ① 행정안전부 ② 교육부

조 치 기 관 ① 행정안전부 ② 교육부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구 내무부)는 구(區) 자치제¹⁾ 실시에 대비하여 시·구 간 재산분할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987. 5. 18. 특별시 및 각 광역시(구 직할시)에 「시유 재산 조정지침」을 시달하여 특별시 및 각 광역시(구 직할시) 산하에 자치구를 두고, 특별시 및 각 광역시와 자치구 간 공유재산의 소유 관계를 조정하는 시·구 간 재산분할을 시행하였다.

이후 1991. 3.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정에 따라 특별시 및 각 광역시(구 직할시)와 시·군 단체장(소관 지역교육장)이 소유하고 있던 공유재산 중에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에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 사무 관련 공유재산(학교)의 소유권을 시·도교육감으로 승계한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98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학교 등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1)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1988. 4. 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기존의 도·서울특별시·시·읍·면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구로 변경되면서 특별시와 광역시(구 직할시)의 관할구역 안에 자치권을 가진 구가 생김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시·도교육감 포함)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시·도교육감)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거나 원상복구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교육·학예 사무 제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지도·감독이나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교육부 역시 공유재산법 제98조와 제6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한편²⁾, 공유재산과 관련된 법률인 공유재산법의 소관 부처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법령해석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에 시·도교육청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2)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실질적 실태조사 수행 및 관리대장 현행화를 통해 재산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활성화하는 등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있음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지 않고 있다.³⁾

한편,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할·합병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구 내무부)는 1987. 5. 18. 구 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유재산 조정지침」을 시달하면서 시·구 간 재산분류에 대한 조정작업을 실시하게 했고, 1991년 교육자치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와 관련된 학교 등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 소유로 승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1987년 시·구 간 재산을 분할하고, 1991년 교육자치법 시행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를 교육감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 재산분할이나 승계가 부정확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확한 경계측량 등을 통해 구역변경이나 폐지·설치·분할·합병으로 인한 재산의 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재산분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했다.

또한, 시·도교육감은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무단점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교육부는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3) 교육부는 공유재산법 제44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매년 조사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시·도교육청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실태조사 결과를 따로 보고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나, 공유재산법 제6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교육부도 행정안전부처럼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음

공유재산의 관리현황 등을 보고받고 있는 것과 같이 시·도교육청에 공유재산의 관리현황 등을 요청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9. 11. 18.~12. 13.) 중 17개 시·도교육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학교들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점검⁴⁾한 결과, [표]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3개 시·도교육청 관내 313개 학교가 총 506필지, 171,713㎡(재산평가액 763억여 원)상당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토지)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시·도 교육청별 학교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단위: 개, 필지, ㎡, 만 원)

연번	소관청	학교 수	필지 수	점유면적	재산평가액
합계	13	313	506	171,713	7,634,200
1	서울특별시교육청	67	107	19,688	4,660,626
2	부산광역시교육청	8	9	1,696	186,360
3	대구광역시교육청	3	4	990	105,802
4	인천광역시교육청	29	54	19,326	724,080
5	울산광역시교육청	1	1	36	1,806
6	경기도교육청	27	47	8,159	435,182
7	강원도교육청	32	63	54,641	537,106
8	충청북도교육청	9	11	2,568	10,453
9	충청남도교육청	7	7	4,403	75,508
10	전라북도교육청	18	23	10,736	48,639
11	전라남도교육청	56	95	11,726	70,680
12	경상북도교육청	6	9	12,866	105,575
13	경상남도교육청	50	76	24,878	672,383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17개 시·도교육청이 공유재산법 제44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학교용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2018년 기준의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기준)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점검하였는데 무단점유 현황이 없다고 회신한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서 무단점유 현황을 제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그 원인으로 [별표] “시·도교육청별 학교의 공유 재산 무단점유 사유”와 같이 교육자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공유재산(학교용지)이 시·도교육청으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이나 토지분할 등의 재산분류 조정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무단점유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다음 사례와 같이 일부 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일부 점유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무단점유 관련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아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을 부과받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학교의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

- ●●초등학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관할)의 경우, 1955년 현재의 부지에 초등학교를 개교하였고, 1988년 현재의 학교용지(70㎡)가 포함된 1동 1586번지(231㎡) 전체가 지번 구분 없이 영등포 구유지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음
- 이후 2015년 신길지구 뉴타운개발 계획으로 영등포구가 구 소유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 초등학교가 영등포구 소유 토지 일부(70㎡)를 점유한 것을 알게 되면서 남부교육지원청에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42,669,330원을 부과하였고, 2018년 5월 변상금 미납에 따른 남부교육지원청 관용차량 2대를 압류하는 한편, 2019년 9월 예금압류에 대해 예고 통지하였음(재개발 후 해당 용지는 다시 학교용지로 기부채납될 예정)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은 2018. 11. 12. 행정안전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3조에 따라 원활한 행정협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중재·지원이 필요한 행정협업과제를 제출하도록 수요조사를 하자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 학교 점유 사유지의 변상금 면제 및 무상양여 근거 마련’이라는 행정협업과제를 제출하여 무단점유로 인한 분쟁을 변상금 부과 면제 등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중재나 지원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앞서 ●●초등학교(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관할) 사례와 관련해서 2019. 9. 17.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유재산(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를 받고도 같은 해 10. 1. 회신하는 과정에서 1987년 행정안전부(구 내무부) 방침(「시유재산 조정지침」) 등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 재산조정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행정착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바르게 조정하고, 조정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⁵⁾

또한, 시·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고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실태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있지 않아 감사원 감사기간 전까지 이와 같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⁶⁾

이와 같이 1991년 교육자치법 시행 이후 시·군 단체장이 소유하고 있던 교육·학예 사무 관련 공유재산이 시·도교육감으로 부정확하게 승계되었는데 행정안전부는 현황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고, 교육부는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상

5) 공유재산법에는 고의·과실 없이 무단점유하는 경우에 대해 변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나, 「도로법」 제72조 제2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면제도 가능함

6) 공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르면 교육·학예 사무 관련 공유재산(학교)의 실태조사 결과는 시·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의 지방자치단체 토지 점유 문제를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분쟁이 발생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미 학교용지로 활용되고 있어 분쟁의 실익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도교육청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처 차원에서 공유재산법 개정 등의 제도적인 해결이 필요하여 별도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견을 제출함

태가 되어 변상금을 부과받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지가 교육감 소관으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계복원측량의 오류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를 실질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와 함께 실태를 파악한 후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학교 포함) 간 상호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한 후, 행정안전부와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 재산 이관 과정에서 부정확한 재산 분할 등으로 인해 학교 등이 귀책사유 없이 무단점유한 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해 경계측량 및 토지의 교환 등을 거쳐 소유 관계를 조정하고, 귀책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점유한 학교 등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 부정확한 재산 분할 등으로 인해 학교 등이 무단점유한 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에 대해 경계측량 및 토지의 교환 등을 거쳐 소유 관계를 조정하는 등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시·도 교육청별 학교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유

연번	소관청	무단점유 사유
1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자치제도 시행 시 학교들의 실제 점유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따라 구유지로 일괄 재산이 승계되다보니 무단점유 발생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설립 당시부터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방교육자치제 시행(1991년) 이후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재산을 이관하다 보니 무단점유 발생
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설립 당시부터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에 대한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무단점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대부분이 개교 시부터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로 1991년 교육자치제 시행을 하면서 경계측량 등이 제대로 되지 못한 채 교육감에게 승계된 것으로 추정
5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설립 당시 측량 오류로 인해 무단점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6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자치(1991년) 실시 이후 재산이 이관되지 않았거나, 측량오차로 무단점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7	강원도교육청	1991년 교육자치법 제정 시점에 교육·학예 사무 관련 공유재산이 시·군단체장에게서 교육감으로 승계(이관)되면서 공부정리 불량, 미등기 등의 사유로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8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자치제도 시행 시 실제 점유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따라 구유지로 재산승계
9	충청남도교육청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공유재산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임
10	전라북도교육청	대부분 학교 신설 당시부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공유재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온 것으로 추정
11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설립 이후 정확한 측량 없이 시·군에서 교육감으로 공유재산이 이관됨에 따라 무단점유 발생
12	경상북도교육청	1991년 교육자치법 제정 이후 시·군의 공유재산이 지적 측량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교육청으로 이관
13	경상남도교육청	1963년 및 1991년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교육·학예에 대한 재산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혼재한 상태로 있다가 무단점유 상태로 남은 것으로 추정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기관 간 정보연계로 축산물 유통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

소 관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조 치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모 범 부 서 유통사업본부 정보사업처

모 범 내 용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사업본부 정보사업처(이하 “위 부서”라 한다)는 「축산물법」 제36조, 「직제규정」(축산물품질평가원 내규) 제12조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 따라 축산물¹⁾ 유통과 관련된 정보화 기획,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공공데이터·통계정보의 대외 제공 업무를 담당하면서 축산물의 이력·검사·등급·인증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거래증명 통합포털’ 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1. 축산물 인증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축산물 거래와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다음 사례와 같이 축산물 등급정보·이력번호·원산지 등을 위·변조하여 유통·납품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지속되었고, 각 축산물 수요처에서는 [별표 1] “축산물 인증정보 종류”에서 보는 것처럼 축산물 유통업체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발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축산물을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급받은 도축검사증명서 등의 인증정보 진위(眞僞)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²⁾을 방문(온라인 확인 포함)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부정 축산물 유통·납품 관련 언론보도 사례

- [사례 1] 학교 급식용 쇠고기 이력 속인 납품업체 등 적발 (연합뉴스, 2012. 10. 30.)
 -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은 31개 초·중·고교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와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하여 납품업체 25곳 중 개체식별번호를 속인 12곳을 적발
- [사례 2] 가짜 한우 급식 재료로 공급한 업체 적발 (KBS, 2013. 1. 31.)
 - 경찰은 인천광역시 관내 158개 초·중·고교에 육우를 한우라고 속이고 유통기한까지 지난 고기를 납품한 업체 대표 적발

이에 위 부서는 축산물 통합인증정보 제공을 통한 유통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13년 4월경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협업과제 수요조사 시 ‘축산물 거래 증명 일원화’³⁾ 과제를 제출하였고, 해당 과제가 공공기관 협업과제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13년 7월에 사육단계 생산농가의 친환경·식품안전관리인증(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 인증”이라 한다) 등의 인증정보를 연계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3.0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위 부서는 2013년 11월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HACCP 인증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방안을 협의하고, 업무협약 체결 및 실무협의 개최 등의 노력을 계속하는 등 [별표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 추진 경과”에서 보는 것처럼 축산물의 품질 및 식품안전정보 등을 담당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HACCP 인증정보·도축검사증명 정보·친환경축산물 인증정보 등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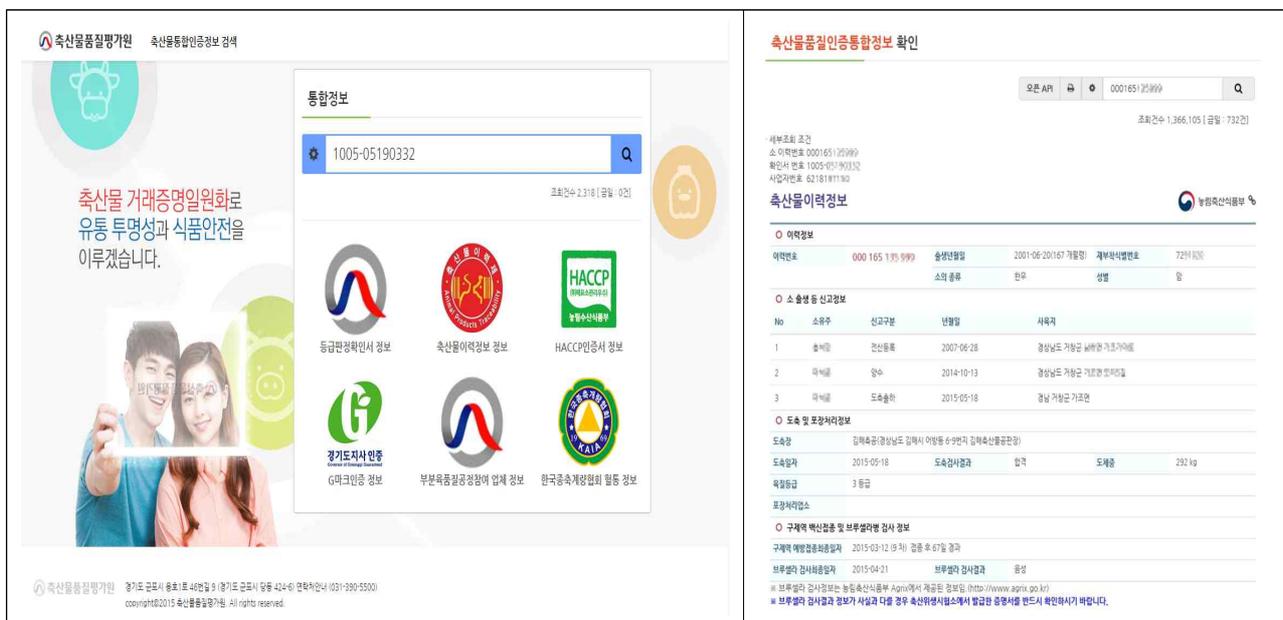
2)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품질평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기도, 황성군, 한국중축개량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8개 기관

3) 축산물 거래증명 일원화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축산물의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한 장의 서류로 발급함으로써 거래내역을 증명해주는 서비스를 말함

인증정보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5년 8월에는 [그림 1]과 같이 그동안 연계된 인증정보 및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축산물 이력 정보·등급판정 정보·부분육 품질인증업체 정보를 소비자가 PC와 모바일에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거래증명 일원화’ 서비스를 개시⁴⁾하였다.

[그림 1] 거래증명 일원화 서비스 제공 화면 및 조회 결과 예시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이를 통해 축산물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정보·등급판정정보·HACCP 인증정보 등 11종⁵⁾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One-Stop)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축산물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온라인 확인 포함)해야 하는 시간을 절감하게 되었고, 축산물 유통업체 등도 한번에 통합정보를 확인해 유통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업무처리의 효율도 향상되었다.

4) 거래증명 일원화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개시하였음
 5) ① HACCP 인증정보, ② 경기도 G마크 인증정보, ③ 가축유통등록 정보, ④ 황성환우 인증정보, ⑤ 도축검사 증명 정보, ⑥ 식품영양성분 정보, ⑦ 친환경축산물 인증정보(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⑧ 축산물 등급판정 정보, ⑨ 축산물 부분육 품질인증업체 정보, ⑩ 축산물이력 정보, ⑪ 브루셀라 검사 정보

2. 축산물 거래증명 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통합증명서 발급 추진

“1항”과 같이 위 부서에서 축산물 인증정보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인증정보의 조회만 통합하여 가능할 뿐, 관계 증명서류는 통합되지 않아 유통업체 등은 여전히 개별 증명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이로 인해 축산물 유통 시 요구되는 인증정보를 한 장의 통합증명서로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 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위 부서는 개별 증명서류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세부과제로 “거래증명 서류 간소화” 과제를 제출하였고, 해당 과제가 2016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기획재정부 주관)를 통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17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통합증명서 서식 마련 등을 위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위 부서는 2018년 2월에 통합증명서 발급 및 관리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축산물 거래증명 통합포털시스템 구축 계획(안)”을 수립한 후, 2018년 7월부터 축산물 거래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⁶⁾을 수행하면서 거래정보 통합시스템에 전자 발급 기능이 적용된 통합증명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통합⁷⁾하는 등 신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던 개별 증명서를 축산물 거래증명 통합포털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협약⁸⁾

6) 사업명: 축산물 유통정보 및 등급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기간: 2018. 7. 16.~2019. 1. 12., 용역수행기관: 주식회사 퓨전데이터 컨소시엄, 소요예산: 12억 9,300만 원)

7) 기존 축산물 유통망관리시스템과 거래증명일원화 서비스를 통합하여 거래증명 통합포털을 구축하였고, 거래증명 통합포털에서는 축산물 통합정보 조회, 등급판정신청·결과조회, 통합증명서 발급, 공공급식 검수 등 축산분야 통합민원서비스를 제공

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축산물 거래증명 통합포털시스템 구축 완료 후인 2019년 2월부터 축산물거래증명 통합포털시스템 대국민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고, 2019년 11월부터는 통합증명서 발급·조회 서비스 시범사업⁹⁾도 시작하면서 학교급식을 위해 납품되는 축산물에 대한 각종 증명서류를 [그림 2]와 같이 한 장의 통합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9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고 있다.

[그림 2] 거래증명 통합포털 서비스 제공 화면 및 통합증명서 서식 예시

The image shows two parts of the system. On the left is the website's search interface with categories like '축산물 통합정보 조회' (Search for integrated animal product information) and '축산물 간편한 서비스' (Convenient animal product services). On the right is a sample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소)' (Integrated Animal Product Transaction Information Certificate - Small). The certificate includes fields for issuer, product details, and various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marks.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위 부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축산물 관련 각종 인증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축산물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기관별 인증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축산물 인증서류의 위·변조 방지 및 부정 축산물 유통·납품 차단 등에 기여하였고, 통

8)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황성군 협의(2018. 11. 7.), 한국중축개량협회 및 경기도(북부청) 협의(2018. 11. 12.), 경기도(본청) 협의(2018. 11. 13.),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의(2018. 11. 15.)
 9) 2018. 10. 8. 「축산법」 개정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2019. 8. 27. 개정(2020. 2. 28.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개정안 시행 전까지 통합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합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서류 관리비용¹⁰⁾을 절감하고 축산물 유통과정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사업본부 정보사업처는 축산물 유통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정보연계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서류 관리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 증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

10)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서류 간소화로 인한 관리비용 절감액을 연간 약 1,003억 원 수준으로 산정하였음

[별표 1]

축산물 인증정보 종류

구분	담당 기관	법적 근거	정보 내용
도축검사 증명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가축의 종류, 중량, 도축장명, 도축일자, 검사불합격 처분 정보 등(법정 보관서류)
축산물등급 판정확인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발급: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임)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축산물 품종, 성별, 지육중량, 등급(법정 보관서류)
축산물 이력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발급: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품종, 출생일, 성별, 농가정보, 도축장, 포장처리업체, 구제역 백신 접종·브루셀라 검사정보
친환경 축산물 인증정보	농림축산식품부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인증서의 발급)	친환경축산물 인증정보
HACCP 인증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체의 HACCP 인증정보
경기도 G마크 인증정보	경기도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한 무항생제 축산물 및 HACCP 인증정보
횡성한우 인증정보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품질인증 관리) 및 제20조(품질인증의 기준)	횡성한우 품질정보 (암소·거세: 1등급 이상, 비거세: 2등급 이상 등)
축산물 품질공정관리 업체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품질공정관리 운용 지침」(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16-25호) 제7조(품질공정관리 업체지정)	학교급식용 축산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우수 식육포장처리업체 지정 정보
가축혈통등록 정보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등록규정」 제7조(등록증명서 발급)	가축 혈통 내역, 유전능력, 체형 및 심사성적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 추진 경과^{주)}

관계기관	정보연계 추진 경과	완료 시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인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축산물을 최종 소비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HACCP 인증정보의 연계를 추진 - 생산농가 등의 HACCP 인증정보 연계를 위한 방안 협의: 2013. 11. 15. - 축산물 거래증명 일원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3. 12. 30. - 정보연계 실무협의(2회): 2014. 1. 29., 2014. 3. 14. 	2014년 4월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G마크 인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식품 ICT 융복합모델 개발 사업' 공모에서 '거래증명 일원화' 사업과 경기도가 제출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이 협업과제로 선정되어 경기도 G마크 인증정보 연계를 추진 - 농식품 ICT 융복합모델 개발 사업 업무협의: 2014. 6. 25. - 농식품 ICT 융복합모델 개발 사업 협의회 개최 : 2014. 8. 11. 	2015년 3월
한국종축개량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혈통등록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가축의 개량 및 사육·번식·출하 등의 과정에서 등록된 가축 개체별 혈통등록정보의 연계를 추진 - 연계방식: 매월 1회 파일 전송 	2015년 7월
횡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성한우 인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성군에서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횡성한우 품질인증 정보가 거래증명 일원화 서비스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정보연계를 추진 - 횡성한우 품질인증 정보연계 업무협의(4회): 2015. 7. 9., 2015. 8. 7., 2016. 3. 16., 2016. 4. 6. 	2016년 7월
농림축산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검사증명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유통단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도축검사증명서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정보의 연계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계체계를 구축 - 도축검사증명서 정보연계 업무협의(4회): 2015. 8. 12., 2016. 3. 29., 2016. 7. 5., 2016. 8. 23. - 데이터 연계 및 서비스 개발: 2016. 8. 1.~2016. 10. 27. 	2016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영양성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축산물의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원하는 부위를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연계를 추진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연계서비스 신청 및 제공: 2016년 11월 	2016년 11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축산물 인증정보(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비료 및 첨가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정보제공을 위해 연계를 추진 - 친환경축산물 인증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의(4회): 2017. 4. 25., 2017. 5. 26., 2017. 7. 12., 2017. 8. 9. - 데이터 연계 및 서비스 개발: 2017. 9. 10.~2017. 10. 27. 	2017년 10월

주: 축산물 등급판정정보, 축산물 부분육 품질인증업체 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및 브루셀라 검사정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어 별도 정보연계는 불필요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가스관 이설비용 최소화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와의 적극적 협의로 예산 절감 등에 기여
소 관 기 관	국토교통부
조 치 기 관	국토교통부
모 범 부 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모 범 내 용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관리청”이라 한다)은 2014년 3월 착공하여 2021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에서 회화면 배둔리까지 연장 9.4km에 대한 “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건설공사”(총사업비 1,381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건설공사”는 국도 14호선에 대한 신설, 확·포장 및 선형 개량공사로 기존도로에 매설되어 있던 한국가스공사 가스관(D762mm, 2열) 중 5.2km 구간이 신설도로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설 여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국토관리청은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한국가스공사와 공동으로 도로 설계도면, 가스관로 도면, 매설심도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도로의 계획 구조물 및 배수관, 기존에 매설된 가스관로 등에 대해 사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소에서 가스관이 도로 구조물과 교차하거나 지나치게 가

까운 것으로 나타났고, 도로의 확장으로 인해 기존 길어깨 및 비탈면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관이 도로 본선에 위치하는 경우 가스관이 누설하거나 관로에 문제 발생 시 교통처리 등 도로의 유지관리가 어렵고, 가스관의 손상이 우려되는 등 가스관 5.2km 구간 전체에 대한 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가스관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2001년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매설·사용 중이던 천연가스 배관으로, 같은 법 제90조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점용 피허가자로서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관 5.2km를 이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624억 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가스관의 이설에 624억 원을 투입하는 경우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가스관 이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산국토관리청은 2014년 10월부터 한국가스공사, 시공사 및 관리단과 함께 배수관 등 계획 구조물과 기존 가스관로 사이에 간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3개소에 대해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횡단배수관의 위치 또는 높이를 변경하면 원활한 배수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가스관 이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 9월 가스관이 신설도로 본선에 위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하여 주하중(내압¹⁾ + 차량하중²⁾ + 성토하중³⁾) 등

가스관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부산국토관리청은 2017년 2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관 안전성 검토 결과, 계획 구조물과 기존 가스관로 간 간섭이 발생하는 13개소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이설 필요성 등에 대한 시공사 및 감리단의 의견을 토대로 기존 가스관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9개소의 경우 배수체계 변경, 배수관 위치 이동 등 설계변경을 통하여 간섭요인을 제거하고 가스관 4개소(0.5km)만 이설하도록 한편,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관 9개소에 대해 내구성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 3월 ILI 피깅(In-Line-Inspection Pigging)⁴⁾을 통해 기존 가스관로의 부식·결함 등이 있는지 가스관의 내구성을 확인한 후, 2017년 5월부터 위 4개소의 가스관 0.5km에 대한 이설 작업에 착수하여 2018년 12월까지 이설을 완료하였고, 부산국토관리청은 2017년 11월 및 2019년 8월 등 2회에 걸쳐 8개소에 대해서는 횡배수관을 삭제하고 종배수관을 신설하거나, 횡배수관의 위치를 이동하는 등으로 배수관 설계를 변경하였고, 1개소의 경우 교량 설계를 과형강관교에서 RC라멘교⁵⁾로 변경한 후, 2019년 11월 감사일 현재 도로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부산국토관리청이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관 이설 규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관 5.2km 이설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공사비 624억 원 대신 가스관 0.5km 이설에 따른 공사비 31억 원 및 교량공법 변경 등

1) 가스 이송을 위한 내부압력

2)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무게로 인한 하중

3) 도로건설을 위해 쌓은 흙 무게로 인한 하중

4) 배관 내에 내부 유체에 의해 움직여지는 검사용 장비 피그(Pig)를 삽입하여 물리적 결함·부식 등 가스관의 내부상태를 진단하고, 수집된 데이터 결과를 토대로 가스관의 내구성을 분석하는 검사방법

5) 연성체로 이루어진 과형강관교 형식은 교량 상단에 가스관을 지지할 수 있는 물체가 없어 가스관이 처질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가스관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RC라멘교 형식은 H-BEAM 등으로 가스관 하부를 지지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강성체인 RC라멘교 상단에 가스관을 그대로 둘 수 있어 가스관 이설이 불필요함

에 따른 추가 공사비 21억 원 등 합계 52억 원의 공사비만 부담하게 되어 57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부산국토관리청은 가스관 5.2km 이설에 따른 도로 굴착 및 마감처리 등 최대 5년이 소요될 수 있는 추가 공정을 수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 당초 준공 시점인 2021년 1월에 맞춰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모범사례)]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 간 감염병 환자 공유정보 활용 미흡

소 관 기 관 ①소방청 ②질병관리본부

조 치 기 관 ①소방청 ②질병관리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그 밖에 위급상황 시 필요한 활동을 하는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이라 한다) 제4조 등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119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119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각 소방관서의 119구조·구급대장은 감염성 질병 등을 접촉한 경우 접촉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등 신고 의무자로부터 보건소 등을 통하여 제1급감염병부터 제4급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급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를 받는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하여야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청은 119구급대원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환자이송 및 감염병 환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119신고가 접수되면 119구급대원에게 이송대상자가 기존에 감염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알려주어 보호장비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이송대상자가 병원 이송 후 신규로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

을 119구급대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치사율 등 위험성뿐만 아니라 발생 빈도가 높은 감염병 등 감염 우려가 큰 감염병 환자 정보를 소방청에 제공하여 119구급대원의 감염병 감염 방지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소방청은 2016. 11. 3.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환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의한 후, 2017년 3월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감시시스템’과 소방청의 ‘u-119안심콜서비스시스템’을 연계¹⁾하여 24시간 단위로 감염병 환자 정보를 받으면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 총 22종 중 고위험병원체 감염병 11종²⁾에 대해서만 감염병 환자 정보(전화번호, 감염병군, 감염병명 등)를 제공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9. 11. 18.~12. 13.) 중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19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이송한 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병원체 감염병 11종과 결핵³⁾ 등 호흡기로 전파되는 나머지 11종⁴⁾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한

-
- 1)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에서 2016. 1. 14. 소방청(구 국민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 중인 감염병관리 종합정보시스템과 국민안전처의 응급환자에 대한 119구급활동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감염병 관련 격리자·밀접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 2) 제3급감염병 1종(탄저) 및 제4급감염병 10종[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 3) 결핵은 「결핵예방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급성 감염병인 다른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만성감염병에 해당하는 등 감염병 관리방식에 차이가 있어 결핵에이즈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6년 협의 당시 감염병총괄과(구 감염병관리과)의 감염병 정보공유 협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4) 2020. 1. 1.에 개정·시행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급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사율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종 및 제2급감염병(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0종 등 총 11종

결과, [표]와 같이 고위험병원체 감염병 11종에 감염된 환자는 11명에 불과한 반면, 결핵에 감염된 환자는 2,263명에 이르고, 나머지 10종에 감염된 환자는 449명에 이르는 등 현재 소방청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는 감염병 환자 정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표] 119구조·구급대원의 병원 이송 및 이송환자의 호흡기감염병 감염 현황

(단위: 명)

연도	병원 이송환자 수	호흡기감염병 환자 수		
		고위험병원체 감염병	결핵	기타 10종
2017	1,652,603	3	783	73
2018	1,814,544	8	807	174
2019. 9.	1,550,824	0	673	202
계	5,017,971	11	2,263	449

자료: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소방청은 ‘u-119안심콜서비스시스템’과 환자로부터 119신고를 접수하고 119구급대원에게 신고자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연계하고 119에 신고된 전화번호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은 감염병 환자 전화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119구급대원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119구급대원의 해당 감염병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나, ‘u-119안심콜서비스시스템’과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한 후 성명·전화번호·이송한 의료기관명 등 환자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을 연계하면 이송환자의 신규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양 시스템 간 정보를 연계하지 않고 있어 119구급대원에 대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119구급대원의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고, 결핵 등 미연계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하고 감염병에 감염된 상태에서 구급활동을 계속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소방청은 ‘u-119안심콜서비스시스템’과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는 119구급대원의 호흡기 전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제공이 필요한 감염병은 소방청과 정보를 연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에 대한 신규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u-119안심콜서비스시스템’과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간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질병관리본부장은 119구급대원의 호흡기 전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결핵 등을 포함하는 등 소방청에 제공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공기업 등에 대한 계약 특례 승인 처리기준 마련 필요

소 관 기 관 기획재정부

조 치 기 관 기획재정부

내 용

1. 업무 개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2항 등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계약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특례(이하 “계약 특례”라 한다)의 승인을 요청하면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처리 원칙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기획재정부는 2008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을 제정·운용¹⁾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2007. 11. 28. 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음

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계약의 기준·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전제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업무의 특성 등에 맞는 계약 기준·절차를 별도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 유형과 수행업무가 복잡·다양하여 일률적인 계약 기준·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수행업무의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계약 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 특례에 대한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계약절차 운용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지체 없이 검토하고, 계약 특례 승인 여부를 신속하게 회신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9. 11. 18.~12. 13.)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에서 기획재정부에 계약 특례 승인을 요청한 사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처리 경위 등을 확인·점검하였다.

가. LH공사에서 승인을 요청한 계약 특례의 처리 경위

LH공사는 2018. 1. 16. 공사용 자재²⁾ 구매 계약 시 해당 물품에 대해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설정·적용하는 물품구매계약 기준·절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경쟁제품 중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을 선정·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자재를 직접구매(자체구매 또는 조달청 위탁)하여야 함

(계약제도과)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를 요청하였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조에 따르면 계약상 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LH공사는 총액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사용 자재를 직접구매(조달청 구매위탁 또는 자체구매)하면서 입찰공고 시 “물품계약서 특기사항” 및 “입찰유의서(공고문)”에 해당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통상 공사계약의 하자보수 기간(2~5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계약서에도 동일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하고 있었다.

이에 LH공사는 2018. 1. 16. 이와 같이 공사용 자재 구매 계약 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적용하는 위 계약 기준·절차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사항인지, 자체기준으로 운용 가능한 사항인지를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는 2018. 3. 14. LH공사에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서는 물품 납품 후 1년간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품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하자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 기준·절차에 해당되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후 LH공사는 위 회신 내용을 토대로 2018. 4. 5.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시 물품구매계약 기준·절차에 대하여 계약 특례 승인을 요청하였고, 2018. 6. 20.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로부터 협의

의견³⁾을 송부받은 후에 해당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발송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 등 현안사항을 우선 처리한다는 사유로 LH공사에서 승인요청한 위 사항을 사전검토만 한 채로 회신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에서 2019년 10월경 계약 특례 승인 여부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는 문제를 제기하자 LH공사로부터 최초 승인요청을 접수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9. 10. 22.에서야 LH공사에서 승인요청한 원안을 승인(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나. 계약 특례 승인처리 지연 사유 및 문제점

이와 같이 공기업 등으로부터 최초 계약 특례 승인요청을 접수한 이후에 최종 승인처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서 계약 특례에 대한 승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 특례 승인과 관련된 처리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업무가 제각각 처리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기간 중 최근 2년간(2018~2019년 11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 특례 승인을 요청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처리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표] “공기업 등의 계약 특례 승인요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처리 현황(2018~2019년 11월)”에서 보는 것처럼 총 18건의 계약 특례를 승인 처리하면서 최초 승인요청 접수일로부터 최종 승인 여부 회신일까지 최소 0일(승인요청 당일 회신)에서 최대 565일까지 처리기간에 차이가 발생(평균 처리기간은 83.5일)한 것으로 나

3)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의 품질확보 및 입주민 보호를 위해 물품의 하자담보기간과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사의 하자담보기간이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품과 공사 간 보증기간 불일치로 인한 하자처리 지연 등 공공주택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2~5년)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타났다.

이와 같이 LH공사의 계약 특례 승인 사례처럼 담당자의 현안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계약 특례 승인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특례 승인 요청 시 처리기간 등 세부기준⁴⁾ 마련을 통해 계약 특례 승인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기획재정부는 계약 특례 협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계약 특례 협의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원칙적인 처리기간을 설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기간 내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약 특례 협의 기록부를 비치하여 협의 요청현황과 처리현황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의 내부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특례에 대한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승인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원칙적인 처리기간을 설정하는 등 계약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승인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의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등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5조 및 [별표] “관리에 필요한 처리 기한 등”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등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제4조 및 [별표 1] “업무처리기간”에 따라 자본금감소 승인 등 각종 승인업무에 대한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별표]

공기업 등의 계약 특례 승인요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처리 현황(2018~2019년 11월)

연번	기관명	특례사항	최초 승인요청 접수일	최종 회신일	승인 여부	처리 소요기간
1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약 특례	2018. 1. 3.	2018. 1. 8.	승인	5일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약 특례	2018. 1. 18.	2018. 1. 26.	승인	8일
3	한국조폐공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약 특례	2018. 3. 2.	2018. 3. 8.	승인	6일
4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특례 연장	2017. 10. 20.	2018. 3. 8.	승인	139일
5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적용기간 연장	2018. 3. 9.	2018. 4. 17.	승인	39일
6	한국철도공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약 특례	2018. 4. 23.	2018. 5. 2.	승인	9일
7	한국수자원공사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시공책임형 CM 및 순수내역입찰) 추진을 위한 특례	2018. 1. 30.	2018. 5. 29.	조건부 승인	119일
8	한국철도공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약 특례 (정규직 전환 전까지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2018. 6. 11.	2018. 6. 15.	승인	4일
9	중소기업진흥공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약 특례	2018. 6. 25.	2018. 6. 25.	승인	0일
10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2018. 6. 15.	2018. 6. 25.	승인	10일
11	한국전력기술	해외수주사업 이행을 위한 계약 특례	2018. 12. 10.	2019. 3. 14.	승인	94일
12	충남대학교 병원	의료장비 구매대행 서비스 도입 특례	2018. 5. 2.	2019. 3. 21.	승인	323일
13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특례 기간 연장	2019. 1. 4.	2019. 3. 29.	승인	84일
14	한국수자원공사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특례 기간 연장	2019. 4. 3.	2019. 4. 10.	승인	7일
15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특례 기간 연장	2019. 3. 4.	2019. 4. 11.	승인	38일
16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2019. 5. 9.	2019. 5. 23.	승인 (일부 제외)	14일
17	서울대학교 병원	계약대가 지급기준 특례 재승인	2019. 5. 24.	2019. 7. 3.	승인	40일
18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용 지급자재 물품구매계약 기준·절차 특례	2018. 4. 5.	2019. 10. 22.	승인	565일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업무 협의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가기술표준원

조 치 기 관 국가기술표준원

내 용

1. 업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제품을 우수재활용(Good Recycled)제품(이하 “GR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정·공고하고 GR제품 인증서¹⁾를 발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구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2012. 11. 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GR제품의 품질표준(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리고 구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 제5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GR제품에 대한 품질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GR규격제정위원회²⁾로 하여금 품질표준(안)을 작성하게 한 후, GR인증심의위원회³⁾

1) 발급된 인증서를 근거로 제품 제조사는 인증제품 등에 GR제품 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요령 제14조 등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GR제품 인증을 할 때에는 GR인증심의위원회로 하여금 GR제품 품질표준에 적합한지 심의하게 한 후, GR제품을 인증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폐기물관리법」(2016. 7. 21.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관련 [별표 5의2] 제22호 가목 및 다목에는 하수·폐수처리 오니(汚泥)⁴⁾를 고화⁵⁾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제품은 보도블록 등 경량골재를 제조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별표 5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⁶⁾.

따라서 국가기술표준원은 하수·폐수처리 오니를 고화 처리한 재활용제품에 대한 GR제품 품질표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한 용도 외로 하수·폐수처리 오니를 고화 처리한 제품을 사용하는 내용의 품질표준을 제정하여 GR제품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11. 8. 2. 유한회사 ○○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하수·폐수처리 오니를 고화

-
- 2) GR제품의 인증을 위한 GR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을 제정·개정하는 위원회로 국가기술표준원 대상제품 한국산업규격 담당자,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등 중에서 10인 이내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여 구성·운영됨(구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 제8조 및 제9조 등)
 - 3)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해당 GR제품 품질표준으로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GR인증을 하는 위원회로 구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장,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등 중에서 20인 이내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여 구성·운영됨(구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 제4조, 제5조 등)
 - 4) 오니는 하수·폐수처리 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 응집침전, 탈수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분과 고형물로 이루어진 폐기물을 의미하며, 이러한 하수·폐수처리 오니를 유기성 오니라 함
 - 5) 고체형태로 고정시키는 물질과 혼합하여 유해물질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킴
 - 6) 현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르면 폐기물의 종류 중 고화 처리물(51-09-03)은 종이 및 금속 등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R-3-4),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R-10),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유형(R-7-3)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폐수처리 오니를 고화 처리한 제품은 석산에 채움재(R-7-4)로 재활용할 수 없음

처리한 재활용제품을 폐석산(채석이 종료된 석산) 복구용으로 사용하겠다고 GR제품 인증을 위한 품질표준 제정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하수·폐수처리 오니를 고화 처리한 제품은 폐석산 복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GR규격제정 위원회는 2011. 12. 13.부터 2012. 10. 26.까지 다섯차례⁷⁾ 회의를 개최하여 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2호 다목에서 허용하고 있는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 시설 관련 매립시설 복토재 기준을 폐석산 복구 시에도 적용되도록⁸⁾ 품질표준(안)을 작성하였고, 2012. 11. 13. GR인증심의위원회가 위 품질표준(안)이 적절하다고 심의 의결하자 국가기술표준원은 같은 날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의 GR제품 품질표준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은 2012. 12. 14. 유한회사 ○○이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의 GR제품 인증을 신청하자 2013. 2. 5. GR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제품에 대한 GR제품 인증서를 발급하였다.

더욱이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과정에서 2012. 10. 15. 및 11. 13. 환경부가 두 차례에 걸쳐 위 재활용제품에 대해 환경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주변 환경오염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높다고 품질표준안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유기성 오니의 해양 투기가 점진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다양한 육상처리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품질표준을 제정하고, GR제품 인증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폐

7) 2011. 12. 13., 2012. 3. 8., 2012. 5. 31., 2012. 9. 17., 2012. 10. 26.

8) 2011. 12. 13. 개최된 GR규격제정위원회 회의결과이며, 최종적으로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제품 품질표준 관련 해설서에 반영

석산 복구용으로 하수·폐수처리 오니를 고화 처리한 재활용제품에 대해 GR제품 인증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⁹⁾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020. 3. 6.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부합하지 않고, 환경부가 GR규격제정위원회 및 GR인증심의위원회 당시 품질표준안 제정 반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국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품질표준을 폐지하였다.

다만, 감사과정 중 국가기술표준원은 GR규격제정위원회가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품질표준안을 제정한 후, GR인증심의위원회가 「폐기물관리법」 등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최종 의결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은 간사 역할만 담당하여 품질표준안 검토 및 심의를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GR규격제정위원회가 품질표준안에 대한 환경부 검토 의견을 반대 의견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GR제품 품질표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공고하여 인증하므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품질표준을 검토·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치할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한 용도 외로 재활용한 제품을 우수재활용제품으로 인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9) 유한회사 ○○에서 생산한 ‘폐석품 복구용 고화물’ 제품이 2014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토석 채취 이후 훼손된 산림 지역 복구용 복토재로 사용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침출수 유출에 따른 유해물질이 분출되었고, 관리청인 완주군은 2019. 7. 24. 위 업체를 고발한 바 있음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울산시 하천기본계획(척과천) 관련 협의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울산광역시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조 치 기 관 ① 울산광역시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그림]과 같이 울산광역시 관내 지방하천(척과천)의 하천구역(약 12,686㎡)을 포함한 중구와 울주군 일원(1,866,197㎡)에 “**□지구 조성사업**”(사업기간: 2008. 4. 30.~2023. 12. 31., 사업비 8,017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지구 현황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그리고 울산광역시는 「하천법」 제8조 제2항, 제10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척과천의 하천관리청으로서 하천구역을 결정·지정하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하천기본계획 협의 추진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제35호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는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09. 12. 28. “□지구 조성사업”의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받은 이후 5차례¹⁾에 걸쳐 사업지구 조정 등에 대해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하천관리청인 울산광역시는 최초 지구계획 승인(2015. 7. 1.) 및 2차 지구계획 승인(2017. 1. 3.)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지구와 접한 척과천(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척과천 하천기본계획(구 하천정비계획)에 부합되게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시행 전에 협의 또는 재협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하천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하천기본계획에는 하천구역 변경, 방류시설 규모,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1) 1차 지구계획 변경 승인(2015. 7. 1.), 2차 지구계획 변경 승인(2017. 1. 3.), 3차 지구계획 변경 승인(2017. 12. 28.), 4차 지구계획 변경 승인(2018. 12. 10.), 5차 지구계획 변경 승인(2019. 11. 29.)

있다.

그리고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홍수방어계획’에 따르면 [표]와 같이 하천 제내지²⁾에 택지지구 등의 공공시설이 세워질 경우에는 홍수계획규모를 100~200년 빈도(홍수방어등급 B급)³⁾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표] 홍수방어등급과 홍수계획 규모

홍수방어등급	홍수계획규모	제내지 이용
A 급	200~500년	인구밀집지역, 자산밀집지역, 산업단지, 주요 국가기간시설 등
B 급	100~200년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등
C 급	50~80년	농경지 등
D 급	50년 미만	습지, 나대지 등

자료: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는 2001년 50~80년 빈도(홍수방어등급 C급)로 척과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9년 초까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 12. 28. 척과천에 인접한 토지에 “□지구 조성사업” 지구계획을 승인받아 농경지가 상업시설 등으로 변경되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홍수계획규모를 100~200년 빈도로 상향(홍수방어등급: C급 → B급)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다가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 경기변동(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지구 조성사업”을 2015년 초까지 보류하여 울산광역시도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위 공사는 2015. 7. 1. 국토교통부로부터 1차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받으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하천관리청

2) 하천 제방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역

3) 2012년부터 울산광역시 관내 21개 지방하천에 대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 현황을 보면 [별표] “최근 수립한 하천기본계획 계획빈도 현황”과 같이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가지는 100년 빈도, 농지·산지는 80~100년 빈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울산광역시)과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 역시 이미 사업 시행 전 협의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으므로 사업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와 협의하고 협의 내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면서 울산광역시가 최초(2009. 12. 28.) 및 제2차(2017. 1. 3.) 지구계획 변경 승인과정에서 사업 시행 전 협의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울산광역시에 추가 협의 없이⁴⁾ 이미 수립(2001년)된 하천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2018년 9월경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8. 12. 28. 사업을 착공하였다.

하천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

- 2001년 척과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척과천 인근이 농경지여서 홍수계획규모가 50~80년 빈도(홍수방어등급 C급)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척과천 인근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홍수계획규모를 100~200년(B급)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⁵⁾
- [별표] “최근 수립한 하천기본계획 계획빈도 현황”과 같이 2012년부터 울산광역시 관내 21개 하천에 대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은 시가지 인근 하천 5곳 모두 100년 빈도로 상향하여 수립
- 2019년 「홍수량 산정표준지침」(환경부 고시)에 따라 재산정한 척과천의 홍수량은 당초보다 약 24~30% 증가

이로 인해 “**□지구 조성사업**”의 착공을 뒤늦게 인지⁶⁾한 울산광역시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에 맞추어 사업지구 내 저류지와 방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사업내용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공사를 먼저 진행하다 보니 하천 분야는 울산광역시와 차후 별도로 협의하면 된다는 판단 하에 울산광역시에 추가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5) 울산광역시(건설도로과)는 2017. 1. 3. 제2차 지구계획 변경 시점에 척과천 인근이 기존의 농경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도시화로 변경이 예정되는 상황이어서 2018년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광역시에 의견 협의를 요청했을 경우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함

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년 4월 척과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설치를 계획하면서 이에 대한 협의를 울산광역시에 요청하자 울산광역시는 “□지구 조성사업”의 착공 사실을 인지하게 됨

3. 척과천 하천구역에 대한 무상귀속 등 협의 추진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종래의 공공시설(하천·도로·공원 등) 대신 새로운 공공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협의(의견)를 거친 후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와 제41조 제2항 및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 [별표 1]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따르면 지방하천(하천구역)의 관리 사무는 울산광역시 소관이고, 지방하천(하천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 및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국공유지의 관리 사무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대신 사업지구 내 종래의 하천부지를 무상귀속 받기 위해서는 하천구역의 관리청인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 3. 제2차 지구계획 변경 승인 이후 “□ 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척과천 하천구역 포함) 및 공유지를 무상귀속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척과천의 하천구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야 하는데도 국공유지의 관리 사무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사유로 협의권한이 없는 울산광역시

울주군(2017. 12. 14.) 및 중구(2018. 1. 26.)와 각각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대신 사업지구 내 종래의 하천구역을 무상귀속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협의 대상인 울산광역시와 다시 협의해야 하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울산광역시는 “ \square 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홍수계획규모 등이 변동되어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현재 2020년 4월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초안을 작성 중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하천법」에 저촉되는 토지의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는 울산광역시 소관 사무이므로 울산광역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울산광역시와 척과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하천 분야 협의를 하는 등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수립 중인 척과천 하천기본계획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 \square 지구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의 무상귀속과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및 울주군에서 무상귀속 협의 요청에 대해 회신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향후 울산광역시와 추가로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척과천의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변경·수립되는 척과천의 하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지구 조성사업”의 내용을 조정하는 한편, 사업지구 내 하천구역의 무상귀속에 대해 울산광역시와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최근 수립한 하천기본계획 계획빈도 현황

(단위: 년)

연번	하천명	기 수립		변경 수립		제내지 이용
		고시일자	계획빈도	고시일자	계획빈도	
1	태화강(상류)	1994. 1. 7.	50	2012. 5. 3.	80	임야·농지
2	회야강(상류)	1994. 1. 7.	50	2016. 12. 1.	80	임야·농지
3	상천천	2002. 12. 26.	50	2016. 12. 1.	80	임야·농지
4	작괘천	2001. 9. 13.	50	2016. 12. 1.	80	임야·농지
5	굴화천	2004. 7. 8.	80	2016. 12. 1.	100	시가지 하천
6	약사천	1993. 5. 25.	50	2016. 12. 1.	100	시가지 하천
7	무거천	1997. 2. 27.	50	2016. 12. 1.	100	시가지 하천
8	국수천	2004. 4. 15.	100	2016. 12. 1.	80	임야·농지
9	호계천	1998. 5. 14.	50	2016. 12. 1.	100	임야·농지
10	성안천	2001. 9. 13.	50	2017. 12. 21.	80	임야·농지
11	운곡천	2005. 5. 12.	50	2017. 12. 21.	80	임야·농지
12	명촌천	2005. 1. 13.	50	2017. 12. 21.	100	시가지·공단지역 하천
13	방기천	1996. 11. 14.	50	2017. 12. 21.	80	임야·농지
14	곡천천	2001. 9. 13.	50	2017. 12. 21.	80	임야·농지
15	남창천	2002. 12. 26.	50	2017. 12. 21.	80	임야·농지
16	효암천	2002. 12. 26.	100	2017. 12. 21.	100	시가지·원전지역 하천
17	대복천	2000. 8. 3.	50	2017. 12. 21.	80	임야·농지
18	화산천	2000. 8. 3.	50	2017. 12. 21.	80	임야·농지
19	중리천	2005. 5. 12.	50	2017. 12. 21.	80	임야·농지
20	보은천	2004. 1. 15.	50	2017. 12. 21.	80	임야·농지
21	신명천	2004. 7. 8.	80	2017. 12. 21.	80	임야·농지

자료: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직권 용도폐지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기획재정부

조 치 기 관 기획재정부

내 용

1. 업무 개요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제22조 등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각 중앙관서 일반회계 소관의 국유재산¹⁾을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유재산법」 제2조 제10호 및 제22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청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국유재산을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폐지 등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용도폐지되어 인계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1) 국유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재산(「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구분)과 일반재산(행정재산 외 모든 국유재산, 대부 및 처분 가능)으로 구분되는데, 기획재정부는 실태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행정 목적을 상실한 각 중앙관서의 일반회계 소관 유휴 행정재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고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관서 일반회계 소관²⁾ 국유 재산 중 행정 목적을 상실한 유휴 행정재산을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후에 인계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은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대부·개발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관리·활용하고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법」 등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소관 관리청은 하천 등에 대하여 개별 점용 허가의 신청에 따른 검토와 허가를 하는 등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소관 관리청이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구분	하천	소하천	도로		농어촌도로
근거 법률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지정	제7조 및 제10조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3, 제4조	제11조~제18조, 제25조	제43조	제4조 및 제6조
관리청	제8조	제3조 제6항	제11조~제18조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준용)	제5조 제1항
유지·보수	제27조	제3조 제6항	제31조	「도로법」 제31조(준용)	제5조 제1항
점용 허가의 검토	제33조	제14조	제61조	「도로법」 제61조(준용)	제18조

자료: 관련 법령 재구성

2) 「국유재산법」 제8조 제3항 및 제4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도 총괄청에 인계해야 하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음

또한, 「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경작 목적으로 실경작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재산법」에서는 일반재산을 경작 목적으로 대부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유재산인 하천구역에 대해 경작 목적의 신규 점용 허가를 금지하는 등 「하천법」 등의 개별 법령에는 「국유재산법」과는 다르게 개별적인 행위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관 관리청이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있는데, 하천구역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유재산에 대해서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에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변경 및 이관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의 직권 용도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을 때 각 중앙관서는 용도폐지 대상 재산이 「하천법」상 하천 등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하천 등이 용도폐지 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에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면 하천 등의 지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용도폐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국유재산이 하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에 행정재산 사용 승인을 신청하도록 요청함으로써 해당 재산이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표 2]와 같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총 4차례에 걸쳐 국유재산에 대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면서 2018년과 2019년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통하여 법령상의 제한구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³⁾를 거쳤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조달청을 통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만 유휴 행정재산을 선정하여 소관 부처에 자체 용도폐지⁴⁾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 2] 최근 5년간(2015~2019년) 기획재정부의 직권 용도폐지 현황

(단위: 필지)

연번	대상 ^{주)}	직권 용도폐지일	필지 수
1	6차 직권 용도폐지 시 제외됐던 행정재산 중 재차 검토하여 용도폐지 실익 및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재산	2015. 5. 4.	665
2	하천, 도로 등 공공용재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실태조사에 따라 유휴 행정재산으로 파악된 재산	2016. 4. 7.	646
3	조달청 실태조사 등에 따라 필지 전부가 미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	2018. 1. 30.	7,367
4	조달청 실태조사 등에 따라 필지 전부가 미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와 각 부처에서 유휴 행정재산으로 보고한 재산	2019. 9. 26.	14,491

주: 기획재정부는 용도폐지 대상 중 소관 부처가 자체 용도폐지하거나,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국유재산을 제외하고 용도폐지 절차 등을 추진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3) 기획재정부는 2018년 추진한 9차 직권 용도폐지 과정에서 조달청 실태조사 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통하여 법령상 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 적용사항을 확인하였고, 2019년 추진한 10차 직권 용도폐지 과정에서 소관 부처의 직권 용도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19,339필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개별법상 관리와 처분이 제한되는 4,510건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4)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 등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것을 말함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이 용도폐지를 요청한 재산 중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가 자체 용도폐지하지는 않으면서 별도로 이견 등을 제시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제22조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하였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11. 18.~12. 13.) 중 2015년과 2016년에 기획재정부가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1,311필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관 등에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그 용도를 확인⁵⁾한 결과, [표 3] 및 [별표]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나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재산 명세”와 같이 2015년에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665필지 중 6%인 41필지, 2016년에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646필지 중 20%인 134필지가 기획재정부가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시점에서 이미 하천 등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어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국유재산인데도 직권으로 용도폐지되었다.

[표 3] 행정재산으로 관리 필요 여부 및 그 용도 조회 결과

(단위: 필지)

구분	합계	행정재산으로 관리 필요 ¹⁾				그 외 ⁴⁾	행정재산으로 관리 불필요 등 ⁵⁾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나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재산					
		소계 (합계 대비 비율)	하천 ²⁾	도로 ³⁾	기타		
합계	1,311	175 (13%)	128	42	5	153	983
2015년	665	41 (6%)	10	28	3	58	566
2016년	646	134 (20%)	118	14	2	95	417

5) 2018년에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필지의 경우, 전라남도 소관 1,414필지에 대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를 표본 조사한 결과, 30필지(총 조사 필지 대비 2%)가 용도폐지일(2018. 1. 30.)을 기준으로 하천 및 도로 등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데도 용도폐지되었으나, 실태조사 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통하여 법령상 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 적용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대부분의 필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됨. 2019년에 직권 용도폐지한 필지의 경우, 전라북도 소관 2,172필지에 대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를 표본 조사한 결과, 7필지(총 조사 필지 대비 0.3%)가 용도폐지일(2019. 9. 26.)을 기준으로 하천 및 도로 등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데도 용도폐지되었으나, 직권 용도폐지 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통하여 법령상 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 적용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대부분의 필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주: 1. 하천구역에 일부 저축되는 등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성격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필지에 포함, 합계 대비 비율은 필지 수 기준
2.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포함
 3.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포함
 4. 기획재정부의 직권 용도폐지 이후 하천 및 도로 등으로 지정되는 등 새로이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발생하거나, 비법정 도로·구거 등 현황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신한 필지 및 보전대상 폐천부지 등
 5. 타 부처 특별회계에 편입 등으로 현재 소관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으로 관리 중인 재산 포함

자료: 지방자치단체 등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해,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 관리청이 관리해야 하는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면서 「하천법」에 따르면 점용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데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등 다음 사례와 같이 법령에 정한 것과 다르게 국유재산이 관리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국유재산이 법령에 어긋나게 관리되는 사례

-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유재산인 하천구역에 대해 경작 목적의 신규 점용허가는 불가능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하천구역(경상남도 의령군 1필지, 3,099㎡)에 대해 경작 용도로 사인과 대부계약을 체결(연간 대부료: 356,380원, 대부 기간: 2017. 3. 28.~2022. 3. 27.)하였음
- 「하천법」 제33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는 하천점용허가 금지 대상인데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하천구역(경상북도 경주시 1필지 4,496㎡)에 대해 필지 일부(245㎡)를 목장용지(축사) 용도로 사인과 대부계약을 체결(연간 대부료: 281,750원, 대부 기간: 2016. 1. 1.~2020. 12. 31.)하였음

관계기관 의견 기획재정부는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하천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관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해서 개별 법령상 행위 제한이 있는 구역 내의 재산인지를 점검한 후, 소관 중앙관서와 협의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관서가 제한구역 지정폐지나 구역변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독려 및 안내하고,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소관 중앙관서에서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 신청을 승인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며, 향후 직권 용도폐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개별 법령상 제한구역 지정이 확인되면 이를 고려하여 용도폐지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이 개별 법령에 어긋나게 관리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중 「하천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소관 부처로 하여금 사용 승인 신청하도록 요청하는 등으로 행정재산으로 전환하고, 국유재산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관리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나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재산 명세

(단위: m²)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구분	관련 고시 (고시 일자)
합계 175필지					
2015년 소계 41필지					
1	2015년	-	9	도로	건설부 고시 제560호 (1963. 9. 19.)
2	2015년	-	8	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334호(1971. 11. 9.)
3	2015년	-	9	도로	건설부 고시 제585호 (1970. 12. 17.)
4	2015년	-	23	도로	건설부 고시 제585호 (1970. 12. 17.)
5	2015년	-	18	도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33호(2000. 3. 4.)
6	2015년	-	23	도로	용인시 고시 제2009-362호 (2009. 8. 27.)
7	2015년	-	31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2-337호 (2012. 10. 24.)
8	2015년	-	15	도로	건설부 고시 제448호 (1973. 11. 19.)
9	2015년	-	17	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9-258호(1999. 10. 21.)
10	2015년	-	26	도로	강릉시 고시 제2010-89호(2010. 8. 25.)
11	2015년	-	30	도로	속초시 고시 제95-38호(1995. 10. 6.)
12	2015년	-	25	기타	강원도 고시 제2010-126호(2010. 4. 23.)
13	2015년	-	51	도로	강원도 고시 제2010-125호(2010. 4. 23.)
14	2015년	-	10	도로(농어촌도로)	청원군 고시 제2005-47호(2005. 6. 30.)
15	2015년	-	47	도로	충주시 고시 제2005-126호(2005년)
16	2015년	-	126	도로	충주시 고시 제2005-126호(2005년)
17	2015년	-	78	도로	충청북도 고시 제1992-118호(1992년)
18	2015년	-	37	도로	제천시 고시 제2010-7호(2010. 2. 19.)
19	2015년	-	15	도로	제천시 고시 제2010-7호(2010. 2. 19.)
20	2015년	-	10	하천	충청남도 고시 제2008-316호(2008. 12. 1.)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구분	관련 고시 (고시 일자)
21	2015년	-	36	도로	김제시 고시 제1986-116호(1986. 8. 1.)
22	2015년	-	11	기타	목포시 고시 제2014-29호(2014. 2. 13)
23	2015년	-	17	도로	목포시 고시 제2002-39호(2002. 5. 8.)
24	2015년	-	48	기타	여주시 고시 제2015-26호(2015. 2. 5.)
25	2015년	-	14	도로	나주시 고시 제11-33호(2011. 5. 2.)
26	2015년	-	29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1986-96호(1986. 7. 14.)
27	2015년	-	40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1976-115호 (1976. 12. 27.)
28	2015년	-	43	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47호 (1972. 4. 3.)
29	2015년	-	16	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237호(1975. 12. 17.)
30	2015년	-	34	도로	확인 불가 (2008. 4. 2.)
31	2015년	-	35	하천	경상북도 고시 제2015-83호(2015. 3. 2.)
32	2015년	-	23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75호(2010. 5. 26.)
33	2015년	-	25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04호(2013. 3. 15.)
34	2015년	-	42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04호(2013. 3. 15.)
35	2015년	-	23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04호(2013. 3. 15.)
36	2015년	-	32	소하천	확인 불가 (2011. 7. 7.)
37	2015년	-	10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83호(2009. 9. 8.)
38	2015년	-	40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83호(2009. 9. 8.)
39	2015년	-	12	도로	경상남도 공고 제2005-192호(2005. 4. 14.)
40	2015년	-	23	도로	밀양시 공고 제71호 (2009. 11. 26.)
41	2015년	-	13	도로	거제시 고시 제289호(2014. 9. 11.)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구분	관련 고시 (고시 일자)
2016년 소계 134필지					
42	2016년	-	678	하천 등	수원시 고시 제2015-20호(2015. 1. 20.)
43	2016년	-	3,108	도로	수원시 고시 제2014-323호 (2014. 12. 12.)
44	2016년	-	894	도로 등	경기도 고시 제2006-5192호 (2006. 12. 7.)
45	2016년	-	1,393	소하천	성남시 고시 제2011-24호(확인 불가)
46	2016년	-	397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3. 14.)
47	2016년	-	343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3. 14.)
48	2016년	-	2,303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3. 14.)
49	2016년	-	603	하천 등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3. 14.)
50	2016년	-	302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08-517호 (2008. 12. 16.)
51	2016년	-	258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08-517호 (2008. 12. 16.)
52	2016년	-	215	기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0-203호(2000. 6. 29.)
53	2016년	-	2,089	하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31, 132호(2011. 8. 9.)
54	2016년	-	1,601	하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31호(2012. 10. 5.)
55	2016년	-	7,985	하천 등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2. 2.)
56	2016년	-	1,548	하천 등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2. 2.)
57	2016년	-	1,712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2. 2.)
58	2016년	-	7,284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2. 2.)
59	2016년	-	3,878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2. 2.)
60	2016년	-	1,509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2. 2.)
61	2016년	-	1,161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2. 2.)
62	2016년	-	370	하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8호(2012. 2. 7.)
63	2016년	-	2,321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2. 2.)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구분	관련 고시 (고시 일자)
64	2016년	-	2,336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2. 2.)
65	2016년	-	432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2. 2.)
66	2016년	-	450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2. 2.)
67	2016년	-	344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2. 2.)
68	2016년	-	743	도로 등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2. 2.)
69	2016년	-	94	하천 등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2. 2.)
70	2016년	-	281	하천 등	경기도 고시 제2012-66호(2012. 2. 2.)
71	2016년	-	1,952	소하천	확인 불가(1996. 1. 16.)
72	2016년	-	3,768	하천	경기도 공고 제2006-57호(2006. 1. 31.)
73	2016년	-	12,801	소하천	확인 불가(1996. 1. 16.)
74	2016년	-	1,198	하천	경기도 고시 제3148호 (1965. 3. 1.)
75	2016년	-	655	소하천	확인 불가(1996. 1. 16.)
76	2016년	-	1,219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4-267호(2014. 9. 30.)
77	2016년	-	4,800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2-122호(확인 불가)
78	2016년	-	8,748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2-122호(확인 불가)
79	2016년	-	7,842	하천	경기도 고시 제2010-133호(확인 불가)
80	2016년	-	988	하천	흑천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 (2004. 1. 2.)
81	2016년	-	358	하천	흑천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 (2004. 1. 2.)
82	2016년	-	412	하천	흑천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 (2004. 1. 2.)
83	2016년	-	392	하천	흑천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 (2004. 1. 2.)
84	2016년	-	320	하천	흑천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 (2004. 1. 2.)
85	2016년	-	287	하천	대통령령 제16535호 (1999. 8. 9.)
86	2016년	-	1,229	하천	강원도 고시 제2007-174호(2007. 8. 31.)
87	2016년	-	7,163	하천	강원도 고시 제2007-174호(2007. 8. 31.)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구분	관련 고시 (고시 일자)
88	2016년	-	380	하천	건설부 고시 제158호 (1981. 5. 4.)
89	2016년	-	5,080	하천	강원도 고시 제2002-18호(2002. 2. 23.)
90	2016년	-	790	기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47호(2005. 11. 2.)
91	2016년	-	1,958	하천	강원도 고시 제2004-98호(2004. 6. 19.)
92	2016년	-	490	하천	강원도 고시 제1991-33호(1991. 2. 2.)
93	2016년	-	840	도로	강원도 고시 제2010-335호(2010. 10. 1.)
94	2016년	-	8,576	하천	대통령령 제16535호 (2005. 11. 4.)
95	2016년	-	1,518	도로(농어촌도로)	양구군 고시 건설-58700-1276(1996. 10. 22.)
96	2016년	-	4,760	하천	건설부 고시 제44호 (1987. 2. 12.)
97	2016년	-	1,374	하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62호(2012. 2. 14.)
98	2016년	-	1,181	하천	확인 불가(1997. 3. 14.)
99	2016년	-	3,067	도로(농어촌도로)	진천군 공고 제2015-924호 (2015. 10. 15.)
100	2016년	-	6,425	소하천	괴산군 고시 제2015-132호 (2015. 12. 31.)
101	2016년	-	1,561	하천	충청북도 고시 제2000-57호(2000. 6. 2.)
102	2016년	-	1,164	하천	충청남도 고시 제2014-279호 (2014. 10. 10.)
103	2016년	-	884	하천	충청남도 고시 제2008-372호 (2008. 12. 30.)
104	2016년	-	354	소하천 등	확인 불가 (1995. 12. 1.)
105	2016년	-	876	하천	충청남도 고시 제2010-180호(2010. 6. 10.)
106	2016년	-	540	하천	충청남도 고시 제2010-180호(2010. 6. 10.)
107	2016년	-	753	하천	충청남도 고시 제2010-180호(2010. 6. 10.)
108	2016년	-	4,941	하천	확인 불가(2012. 6. 19.)
109	2016년	-	1,253	도로	도로지정고시(소로 3-223) 전북125(1977. 7. 12.)
110	2016년	-	822	도로	도로지정고시(중로 3-12) 전북24(1989. 2. 22.)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구분	관련 고시 (고시 일자)
111	2016년	-	178	하천	전라북도 고시 제2014-273호(2014. 11. 7.)
112	2016년	-	301	도로 등	확인 불가(2013. 5. 20.)
113	2016년	-	940	하천	전라북도 고시 제2001-376호 (2001. 12. 14.)
114	2016년	-	1,365	소하천 등	확인 불가(1996. 11. 14.)
115	2016년	-	3,030	소하천 등	확인 불가(1996. 11. 14.)
116	2016년	-	3,968	하천 등	전라북도 고시 제260호 (1982. 10. 11.)
117	2016년	-	8,968	하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7호(2012. 1. 26.)
118	2016년	-	6,239	하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7호(2012. 1. 26.)
119	2016년	-	1,412	하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7호(2012. 1. 26.)
120	2016년	-	640	하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7호(2012. 1. 26.)
121	2016년	-	895	하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7호(2012. 1. 26.)
122	2016년	-	844	하천	전라북도 고시 제2009-424호 (2009. 12. 28.)
123	2016년	-	676	하천	전라북도 고시 제2015-7호(2015. 1. 16.)
124	2016년	-	340	하천	전라북도 고시 제2002-287호(2002. 11. 1.)
125	2016년	-	221	하천	국가하천구역 고시 (2011년 12월)
126	2016년	-	954	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1992-322호 (1992. 10. 15.)
127	2016년	-	804	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1991-445호(1991. 12. 6.)
128	2016년	-	410	도로	경상북도 고시 제1977-337호 (1977. 10. 12.)
129	2016년	-	4,496	하천	경상북도 고시 제2016-28호(2016. 1. 21.)
130	2016년	-	1,488	하천	경상북도 고시 제2015-183호(2015. 5. 28.)
131	2016년	-	425	도로	경주시 고시 제1997-40호(1997. 6. 21.)
132	2016년	-	7,559	도로	구미시 고시 제2014-206호 (2014. 12. 15.)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구분	관련 고시 (고시 일자)
133	2016년	-	211	하천	확인불가 (1966. 4. 22.)
134	2016년	-	3,670	하천	건설부 고시 제1993-129호 (1993. 4. 19.)
135	2016년	-	1,121	하천	경상북도 고시 제2014-266호 (2014. 7. 31.)
136	2016년	-	4,727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04호(2013. 3. 15.)
137	2016년	-	2,000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539호(2003. 12. 30.)
138	2016년	-	8,573	하천	확인 불가(1996. 12. 8.)
139	2016년	-	11,958	하천	확인 불가(1996. 12. 8.)
140	2016년	-	13,613	하천	확인 불가(1992년 12월)
141	2016년	-	6,324	하천	확인 불가(1992년 12월)
142	2016년	-	5,187	하천	확인 불가(1992년 12월)
143	2016년	-	4,185	하천	확인 불가(1992년 12월)
144	2016년	-	2,991	하천	확인 불가(1992년 12월)
145	2016년	-	3,075	하천	확인 불가(1992년 12월)
146	2016년	-	6,026	하천	확인 불가(1992년 12월)
147	2016년	-	5,283	하천	확인 불가(1992년 12월)
148	2016년	-	17,298	하천	경상남도 고시 제2015-575호 (2015. 12. 17.)
149	2016년	-	9,881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83호(2009. 9. 8.)
150	2016년	-	290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83호(2009. 9. 8.)
151	2016년	-	11,628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83호(2009. 9. 8.)
152	2016년	-	118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83호(2009. 9. 8.)
153	2016년	-	344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83호(2009. 9. 8.)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구분	관련 고시 (고시 일자)
154	2016년	-	2,816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83호(2009. 9. 8.)
155	2016년	-	2,073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83호(2009. 9. 8.)
156	2016년	-	3,115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83호(2009. 9. 8.)
157	2016년	-	3,099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83호(2009. 9. 8.)
158	2016년	-	182	하천	경상남도 고시 제2013-51호(2013. 1. 31.)
159	2016년	-	505	하천	경상남도 고시 제2013-51호(2013. 1. 31.)
160	2016년	-	3,808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20호(2013. 5. 28.)
161	2016년	-	4,331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20호(2013. 5. 28.)
162	2016년	-	972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20호(2013. 5. 28.)
163	2016년	-	961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04호(2013. 3. 15.)
164	2016년	-	3,987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04호(2013. 3. 15.)
165	2016년	-	7,382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20호(2013. 5. 28.)
166	2016년	-	6,651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20호(2013. 5. 28.)
167	2016년	-	11,831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20호(2013. 5. 28.)
168	2016년	-	5,061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20호(2013. 5. 28.)
169	2016년	-	2,998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20호(2013. 5. 28.)
170	2016년	-	3,616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20호(2013. 5. 28.)
171	2016년	-	4,529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20호(2013. 5. 28.)
172	2016년	-	2,618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20호(2013. 5. 28.)
173	2016년	-	2,945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20호(2013. 5. 28.)
174	2016년	-	2,562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20호(2013. 5. 28.)
175	2016년	-	3,753	하천	경상남도 고시 제2013-575호 (2013. 11. 28.)

자료: 기획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발굴문화재 공고 지연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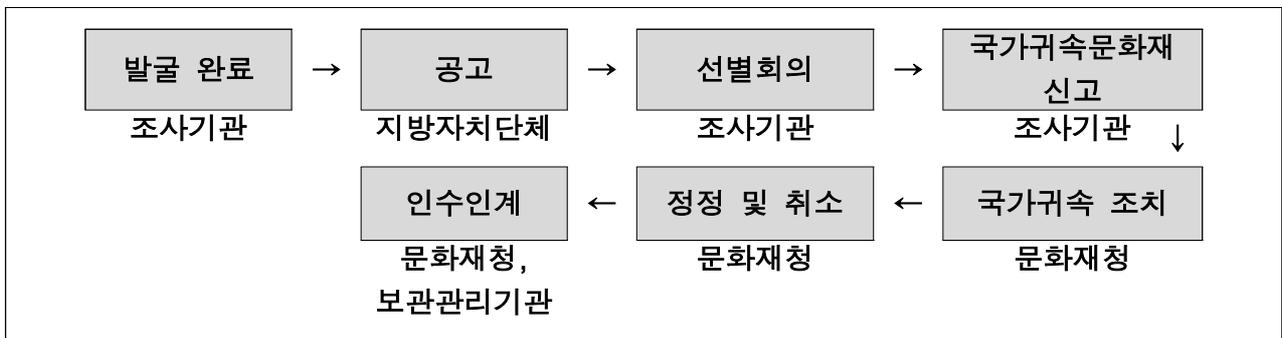
조 치 기 관 문화재청

내 용

1. 업무 개요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62조 및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4조 제1항과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7조 제4항 등에 따라 [그림]과 같이 발굴문화재를 국가귀속 조치하는 등으로 발굴문화재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림] 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자료: 관련 규정 및 문화재청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르면 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

굴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발굴 완료 보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발견 또는 발굴 사실과 출토 유물 현황을 90일간 공고¹⁾한 후에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4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공고 절차가 완료된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기관²⁾이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하는 문화재 선별회의의 결과 등을 제출받아 국가귀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기관은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국가귀속 문화재를 인수하기 전까지 임시보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0조 및 제171조의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 제1호 등에 따르면 주무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하거나, 행정 감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고 절차를 지연하거나 공고를 하고서도 문화재청에 그 결과 제출을 지연하게 되면 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가 이행될 수 없으므로 발굴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문화재의 발굴 완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과 출토 유물 현황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1) 문화재 발굴 사실을 알리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을 위해서 소유권 주장자를 확인하는 절차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임(「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근거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위임되는 국가 위임사무)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문화재를 직접 발굴하는 기관으로 발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과 그 대표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발굴문화재 관리 업무의 총괄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지 않아 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속히 공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문화재청은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2018년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이 지연되는 사유를 조사하여 41개의 지방자치단체³⁾가 171건⁴⁾의 발굴 허가 건에 대해 최대 10년 10개월⁵⁾간 공고를 지연하거나 공고 후 문화재청에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에 2019년 4월 문화재청은 조속한 공고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시행하였는데 공고 등이 지연되고 있는 발굴허가 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그 소재지의 시·군·구 현황만 첨부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37개⁶⁾의 시·군·구는 공고 등

3)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13개 지방자치단체이고, 그중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의 4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발굴문화재 공고 업무를 재위임하고 있어 9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32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임

4) 2018년 문화재청의 실태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고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발굴문화재 국가귀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조사기관들이 회신한 224건 중 나머지 건은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상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지정되어 있어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변경이 필요한 건 혹은 2018년 11월 이전에 공고 절차가 이미 진행됐거나 아직 완료 보고가 되지 않은 건으로서 조사기관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국가귀속 지연 사유를 잘못 제출한 건으로 추정됨

5) 2018년 문화재청의 실태조사 마지막 날인 2018. 12. 31.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대구광역시 서구, 중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천광역시 서구, 중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양주시, 파주시, 강원도 춘천시,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남도 부여군, 태안군,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전주시, 전라남도 강진군, 순천시, 경상북도 경주시, 구미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의성군, 청도군, 경상남도 김해시, 남해군, 양산시, 함양군

을 지연한 건이 있었는데도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14개7)의 시·군·구는 지연한 건이 없었는데도 현황에 포함하는 등 공고 등이 지연되고 있는 발굴허가 소재지 현황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공문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2019년 6월 문화재청은 재차 공문을 시행하면서 공고 등이 지연되고 있는 발굴허가 건이나 그 소재지의 시·군·구를 특정하지 않고,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속히 공고 등을 해줄 것을 요청8)하였다.

이에 공고 등을 지연하고 있던 3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78건의 발굴 허가에 대해서는 공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다음 사례와 같이 [별표] “발굴문화재 공고 지연 및 공고 결과 미제출 현황” 93건에 대해서는 공고 필요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 등으로 감사원이 자료 요구를 한 2019. 10. 7.까지 최대 11년 8개월간 발굴문화재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공고 시행 혹은 공고 결과 제출을 지연한 사례

- 경기도 안성시는 “안성 ㄹ리 □□ 공장증설부지 내 유적” 등 총 8건의 발굴 허가에 대해서 주식회사 □□ 등 발굴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발굴 완료 보고를 받고서도 인수인계 미흡 및 당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공고 누락 등의 사유로 최대 7년 3개월, 최소 2년 10개월간 공고를 하지 않거나 문화재청에 공고 결과 제출을 지연하였음

그 결과, 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가 지연되어 국가귀속 문화재의 임시 보관·관리기관인 조사기관에 그 보관·관리 비용이 전가되고, 다음 사례와 같이 장기간 임시 보관되는 발굴문화재가 분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7)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기도 오산시, 용인시,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아산시, 천안시, 전라남도 해남군, 경상북도 군위군, 안동시, 영주시, 포항시, 제주특별자치도

8) 문화재청은 2018년도 실태조사 시 지방자치단체 공고 결과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발굴 허가 건 중 2019년 11월 감사일 기준으로 여전히 공고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건(74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9. 11. 18.~12. 13.) 중인 2019. 11. 28.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고 시행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함

임시보관 중이던 발굴문화재의 분실 사례

- 2014. 6. 25. △△연구원은 임시보관 중이던 국가귀속 문화재인 반월형석도 등 6점의 문화재를 분실하여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450만 원의 변상금을 보관위임 기관인 진주 박물관에 납부하였음
- 2016. 7. 29. ▷▷박물관은 임시보관 중이던 국가귀속 문화재인 암막새 편 등 6점의 문화재를 분실하여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115만 원의 변상금을 보관위임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납부하였음

관계기관 의견 문화재청은 공고 혹은 공고 결과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고 시행 및 공고 결과의 제출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며, 앞으로 공고 지연이 확인되는 발굴허가 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고 시행 및 공고 결과 제출을 독려하는 등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를 하고도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발굴허가 건에 대해서 조속히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고하거나 공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고 시행 및 공고 결과 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발굴문화재 공고 지연 및 공고 결과 미제출¹⁾ 현황

연번	구분	조사명	허가 번호	발굴 완료 보고일 (공고 요청일 ²⁾)	경과 기간 ³⁾	공고 결과 제출 지연 사유	비고
----	----	-----	----------	---	---------------------	----------------------	----

합계: 총 93건(최소 9개월, 최대 11년 8개월 공고 결과 제출 지연)

서울특별시 소계: 총 6건(최소 3년 7개월, 최대 7년 10개월 지연)

1	서울특별시	-	-	2016. 3. 7.	3년 7개월	당시 담당자의 공고 누락	2019. 10. 11. 공고 2019. 11. 19. 공고 결과 제출
2	서울특별시	-	-	2015. 3. 20.	4년 6개월	당시 담당자의 공고 누락	2019. 10. 11. 공고 2019. 11. 19. 공고 결과 제출
3	서울특별시	-	-	2011. 11. 16.	7년 10개월	당시 담당자의 공고 결과 첨 부 누락	2012. 1. 9. 공고 2019. 12. 5. 공고 결과 제출
4	서울특별시	-	-	2013. 5. 6.	6년 5개월	당시 담당자의 공고 결과 제 출 누락	2013. 5. 29. 공고 2019. 10. 14. 공고 결과 제출
5	서울특별시	-	-	2014. 6. 5.	5년 4개월	당시 담당자의 공고 결과 첨 부 누락	2016. 3. 8. 공고 2019. 12. 5. 공고 결과 제출
6	서울특별시	-	-	2013. 11. 27.	5년 10개월	당시 담당자의 공고 누락	2019. 10. 11. 공고 2019. 11. 19. 공고 결과 제출

대구광역시 소계: 총 1건(3년 8개월 지연)

7	대구 광역시	동구	-	-	2016. 1. 28.	3년 8개월	당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결과 제출 및 인수인계 누락	2016. 1. 28. 공고 2019. 10. 8. 공고 결과 제출
---	-----------	----	---	---	-----------------	--------	--	---

인천광역시 소계: 총 8건(최소 1년 11개월, 최대 8년 지연)

8	인천 광역시	중구	-	-	2011. 9. 9.	8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결과 제출 누락	2012. 7. 13. 공고 2019. 10. 8. 공고 결과 제출
9	인천 광역시	중구	-	-	2014. 6. 13.	5년 3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결과 제출 누락	2016. 12. 14. 공고 2019. 10. 8. 공고 결과 제출
10	인천 광역시	중구	-	-	2015. 4. 15.	4년 5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결과 제출 누락	2018. 1. 25. 공고 2019. 10. 8. 공고 결과 제출

연번	구분		조사명	허가 번호	발굴 완료 보고일 (공고 요청일 ²⁾)	경과 기간 ³⁾	공고 결과 제출 지연 사유	비고
11	인천 광역시	서구	-	-	2016. 5. 12.	3년 4개월	인수인계 소홀로 결과 제출 누락	2016. 6. 13. 공고 2019. 10. 10. 공고 결과 제출
12	인천 광역시	강화군	-	-	2016. 11. 25.	2년 10개월	담당자의 업무 과다로 공고 누락	2019. 10. 10. 공고
13	인천 광역시	강화군	-	-	2017. 2. 28.	2년 7개월	담당자의 업무 과다로 공고 누락	2019. 10. 10. 공고
14	인천 광역시	옹진군	-	-	2015. 7. 16.	4년 2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1. 29. 공고
15	인천 광역시	옹진군	-	-	2017. 10. 13.	1년 11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2. 5.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소개: 총 1건(11년 8개월 지연)

16	세종특별 자치시		-	-	2008. 1. 30.	11년 8개월	당초 충청남도 에서 공고를 누락했던 건으로 2011. 2. 11. 이후 세종시(연기군) 소관이나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공고 지연	2019. 11. 13. 공고
----	-------------	--	---	---	-----------------	---------	--	------------------

경기도 소개: 총 35건(최소 1년 9개월, 최대 8년 6개월 지연)

17	경기도	고양시	-	-	2016. 7. 7.	3년 3개월	공고 필요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공고 누락	2019. 11. 13. 공고
18	경기도	남양주시	-	-	2015. 12. 23.	3년 9개월	담당자 착오로 공고 결과 첨부 누락	2016. 12. 20. 공고 2019. 12. 4. 공고 결과 제출
19	경기도	화성시	-	-	2016. 11. 10.	2년 10개월	담당자 업무 미숙 및 인사 이동으로 공고 결과 제출 누락	2016. 11. 23. 공고 2019. 10. 15. 공고 결과 제출

연번	구분	조사명	허가 번호	발굴 완료 보고일 (공고 요청일 ²⁾)	경과 기간 ³⁾	공고 결과 제출 지연 사유	비고
20	경기도 화성시	-	-	2016. 12. 19.	2년 9개월	담당자 업무 미숙 및 과다 로 공고 누락	2019. 10. 25. 공고
21	경기도 의정부시	-	-	2016. 5. 19.	3년 4개월	당시 담당자가 공고 후 공고 결과 제출 누 락 및 인수인 계 소홀로 공 고 결과 제출 지연	2016. 10. 20. 공고 2019. 12. 5. 공고 결과 제출
22	경기도 시흥시	-	-	2008. 10. 16. (2017. 12. 14.)	1년 9개월	당시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공고 누락	2019. 12. 10. 공고
23	경기도 김포시	-	-	2015. 10. 6.	4년	당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결과 제출 누 락	2015. 10. 15. 공고 2019. 12. 5. 공고 결과 제출
24	경기도 김포시	-	-	2015. 2. 11.	4년 7개월	당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결과 제출 누 락	2015. 5. 19. 공고 2019. 12. 5. 공고 결과 제출
25	경기도 김포시	-	-	2016. 6. 29.	3년 3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2. 5. 공고
26	경기도 광주시	-	-	2006. 9. 29. (2016. 12. 7.)	2년 10개월	공고 결과 첨부 누락한 채로 제 출	2016. 12. 26. 공고 2019. 11. 29. 공고 결과 제출
27	경기도 이천시	-	-	2011. 9. 16.	8년	공고 결과 제출 누락	2014. 4. 28. 공고 2019. 12. 10. 공고 결과 제출

연번	구분	조사명	허가 번호	발굴 완료 보고일 (공고 요청일 ²⁾)	경과 기간 ³⁾	공고 결과 제출 지연 사유	비고
28	경기도	이천시	-	2015. 4. 8.	4년 5개월	공고 결과 제출 누락	2015. 4. 8. 공고 2019. 12. 10. 공고 결과 제출
29	경기도	이천시	-	2014. 2. 6.	5년 8개월	공고 결과 제출 누락	2016. 2. 4. 공고 2019. 12. 10. 공고 결과 제출
30	경기도	이천시	-	2015. 9. 1.	4년 1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1. 19. 공고
31	경기도	이천시	-	2012. 7. 27.	7년 2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2. 4. 공고
32	경기도	양주시	-	2012. 7. 31.	7년 2개월	공고 결과 첨부 누락	2015. 10. 12. 공고 2019. 12. 10. 공고 결과 제출
33	경기도	안성시	-	2014. 1. 23.	5년 8개월	당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및 인수 인계 누락	2019. 10. 16. 공고
34	경기도	안성시	-	2014. 6. 6.	5년 4개월	당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및 인수 인계 누락	2019. 10. 16. 공고
35	경기도	안성시	안성 르리 □□ 공장증설부지 내 유적	2014. 10. 7.	5년	당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및 인수 인계 누락	2019. 10. 16. 공고
36	경기도	안성시	-	2006. 9. 29. (2016. 12. 7.)	2년 10개월	당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및 인수 인계 누락	2019. 10. 16. 공고
37	경기도	안성시	-	2012. 7. 5.	7년 3개월	당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결과 제 출 및 인수인 계 등 누락	2015. 11. 2. 공고 2019. 10. 12. 공고 결과 제출
38	경기도	안성시	-	2014. 3. 28.	5년 6개월	당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결과 제 출 및 인수인 계 등 누락	2014. 4. 9. 공고 2019. 10. 12. 공고 결과 제출

연번	구분		조사명	허가 번호	발급 완료 보고일 (공고 요청일 ²⁾)	경과 기간 ³⁾	공고 결과 제출 지연 사유	비고
39	경도	안성시	-	-	2015. 7. 16.	4년 2개월	당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결과 제 출 및 인수인 계 등 누락	2015. 7. 17. 공고 2019. 10. 12. 공고 결과 제출
40	경도	안성시	-	-	2016. 6. 22.	3년 3개월	당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및 인수 인계 누락	2019. 10. 16. 공고
41	경도	포천시	-	-	2013. 12. 20.	5년 9개월	인사 이동 시 인수인계 소홀 로 공고 누락	2019. 11. 12. 공고
42	경도	포천시	-	-	2011. 3. 16.	8년 6개월	인사 이동 시 인수인계 소홀 로 결과 제출 누락	2015. 1. 27. 공고 2019. 12. 3. 공고 결과 제출
43	경도	포천시	-	-	2012. 6. 27.	7년 3개월	인사 이동 시 인수인계 소홀 로 결과 제출 누락	2015. 1. 27. 공고 2019. 12. 3. 공고 결과 제출
44	경도	포천시	-	-	2013. 5. 16.	6년 4개월	인사 이동 시 인수인계 소홀 로 결과 제출 누락	2014. 3. 13. 공고 2019. 11. 18. 공고 결과 제출
45	경도	포천시	-	-	2014. 9. 11.	5년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공고 누락	2019. 11. 13. 공고
46	경도	포천시	-	-	2011. 3. 19.	8년 6개월	인사 이동 시 인수인계 소홀 로 결과 제출 누락	2015. 1. 27. 공고 2019. 11. 28. 공고 결과 제출
47	경도	포천시	-	-	2014. 6. 19.	5년 3개월	인사 이동 시 인수인계 소홀 로 결과 제출 누락	2015. 5. 27. 공고 2019. 11. 8. 공고 결과 제출
48	경도	과천시	-	-	2015. 8. 28.	4년 1개월	공고 결과 제출 누락	2015. 10. 27. 공고 2019. 12. 2. 공고 결과 제출
49	경도	가평군	-	-	2007. 5. 10. (2015. 12. 16.)	3년 9개월	당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2. 9. 공고

연번	구분	조사명	허가 번호	발굴 완료 보고일 (공고 요청일 ²⁾)	경과 기간 ³⁾	공고 결과 제출 지연 사유	비고
50	경도 가평군	-	-	2007. 7. 23. (2017. 12. 14.)	1년 9개월	공고 필요 여 부 인지하지 못하여 공고 누락	
51	경도 연천군	-	-	2011. 7. 22.	8년 2개월	인사 이동 시 인수인계 소홀 로 결과 제출 누락	2015. 10. 14. 공고 2019. 10. 22. 공고 결과 제출

충청북도 소계: 총 7건(최소 3년 9개월, 최대 6년 10개월 지연)

52	충청북도	-	-	2015. 5. 20.	4년 4개월	공고 결과 첨부 누락	2015. 6. 16. 공고 2019. 12. 2. 공고 결과 제출
53	충청북도	-	-	2015. 8. 7.	4년 2개월	담당자 착오로 공고 누락	2019. 10. 15. 공고
54	충청북도	-	-	2015. 12. 22.	3년 9개월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0. 10. 공고
55	충청북도	-	-	2015. 5. 6.	4년 5개월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공고 후 결과 제출 누락	2015. 5. 12. 공고 2019. 10. 11. 공고 결과 제출
56	충청북도	-	-	2012. 11. 8.	6년 10개월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2. 6. 공고
57	충청북도	-	-	2015. 5. 6.	4년 5개월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2. 9. 공고
58	충청북도	-	-	2015. 10. 28.	3년 11개월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2. 6. 공고

충청남도 소계: 총 9건(최소 2년 4개월, 최대 8년 지연)

59	충청남도	-	-	2015. 11. 2.	3년 11개월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1. 29. 공고
60	충청남도	-	-	2015. 5. 8.	4년 4개월	인수인계 누락으로 공고 결과 제출 누락	2016. 12. 8. 공고 2019. 10. 8. 공고 결과 제출

연번	구분	조사명	허가 번호	발굴 완료 보고일 (공고 요청일 ²⁾)	경과 기간 ³⁾	공고 결과 제출 지연 사유	비고
61	충청남도	-	-	2015. 6. 5.	4년 4개월	인수인계 누락으로 공고 결과 제출 누락	2016. 12. 8. 공고 2019. 10. 8. 공고 결과 제출
62	충청남도	-	-	2015. 10. 16.	3년 11개월	인수인계 누락으로 공고 결과 제출 누락	2016. 12. 8. 공고 2019. 10. 8. 공고 결과 제출
63	충청남도	-	-	2011. 9. 14.	8년	인수인계 누락으로 공고 결과 제출 누락	2011. 10. 6. 공고 2019. 10. 8. 공고 결과 제출
64	충청남도	-	-	2011. 11. 23.	7년 10개월	공고 결과 첨부 누락한 채로 제출	2011. 12. 2. 공고 2019년 12월 중 제출 예정
65	충청남도	-	-	2017. 5. 19.	2년 4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1. 29. 공고
66	충청남도	-	-	2014. 10. 8.	4년 11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0. 10. 공고
67	충청남도	-	-	2016. 10. 21.	2년 11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0. 14. 공고

전라북도 소계: 총 14건(최소 2년, 최대 8년 10개월 지연)

68	전라북도	-	-	2012. 8. 22.	7년 1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2. 3. 공고
69	전라북도	-	-	2015. 1. 16.	4년 8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70	전라북도	-	-	2016. 11. 7.	2년 11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71	전라북도	-	-	2014. 10. 11.	4년 11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연번	구분	조사명	허가 번호	발굴 완료 보고일 (공고 요청일 ²⁾)	경과 기간 ³⁾	공고 결과 제출 지연 사유	비고
72	전라북도	-	-	2014. 7. 11.	5년 2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73	전라북도	-	-	2014. 5. 20.	5년 4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74	전라북도	-	-	2013. 10. 16.	5년 11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75	전라북도	-	-	2012. 8. 23.	7년 1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76	전라북도	-	-	2011. 10. 23.	7년 11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77	전라북도	-	-	2012. 8. 31.	7년 1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78	전라북도	-	-	2010. 11. 15.	8년 10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79	전라북도	-	-	2017. 9. 11.	2년	공고 결과 첨부 누락	2017. 11. 1. 공고 2019. 10. 14. 공고 결과 제출
80	전라북도	-	-	2015. 5. 6.	4년 5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결과 미제출	2015. 11. 5. 공고 2019. 11. 18. 공고 결과 제출
81	전라북도	-	-	2013. 11. 26.	5년 10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결과 미제출	2015. 11. 5. 공고 2019. 11. 18. 공고 결과 제출
전라남도 소계: 총 1건(4년 2개월 지연)							
82	전라남도	-	-	2015. 7. 31.	4년 2개월	담당자의 착오로 공고 누락	2019. 10. 24. 공고

연번	구분	조사명	허가 번호	발굴 완료 보고일 (공고 요청일 ²⁾)	경과 기간 ³⁾	공고 결과 제출 지연 사유	비고	
경상북도 소계: 총 8건(최소 9개월, 최대 6년 9개월 지연)								
83	경상 북도	영천시	-	-	2012. 12. 24.	6년 9개월	당시 담당자의 공고 결과 제출 누락	2018. 6. 21. 공고 공고 결과 제출 예정
84	경상 북도	상주시	-	-	2014. 12. 24.	4년 9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결과 제출 누락	2015. 1. 7. 공고 2019. 11. 12. 공고 결과 제출
85	경상 북도	상주시	-	-	2015. 7. 31.	4년 2개월	당시 담당자의 공고 누락	2019. 11. 14. 공고
86	경상 북도	상주시	-	-	2015. 3. 26.	4년 6개월	당시 담당자의 공고 누락	2019. 10. 10. 공고
87	경상 북도	상주시	-	-	2015. 7. 10.	4년 2개월	당시 담당자의 공고 누락	2019. 10. 10. 공고
88	경상 북도	문경시	-	-	2015. 12. 4.	3년 10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결과 미제출	2019. 3. 12. 공고 2019. 11. 13. 공고 결과 제출
89	경상 북도	의성군	-	-	2016. 5. 4.	3년 5개월	인수인계 소홀로 공고 결과 제출 누락	2016. 6. 10. 공고 2019. 11. 21. 공고 결과 제출
90	경상 북도	의성군	-	-	2018. 12. 8.	9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1. 15. 공고
경상남도 소계: 총 3건(최소 2년 3개월, 최대 4년 7개월 지연)								
91	경상남도		-	-	2017. 6. 19.	2년 3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0. 10. 공고
92	경상남도		-	-	2015. 2. 16.	4년 7개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0. 10. 공고
93	경상남도		-	-	2015. 9. 8.	4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공고 누락	2019. 10. 10. 공고

- 주: 1. 감사원 조회일(2019. 10. 7.) 기준 여전히 공고되지 않고 있거나 공고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발굴 허가 건에 대하여 작성함
2.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6조 제6호 등에 따라 비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재평가를 거쳐 추가로 국가귀속을 요청한 사항의 경우, 조사기관의 발굴 완료 보고일이 아니라 공고 요청일(추가 귀속 요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과 기간을 산정함
3. 감사원 조회일(2019. 10. 7.) 기준 발굴 완료 보고일로부터의 경과 기간

자료: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및 보조금 환수 관련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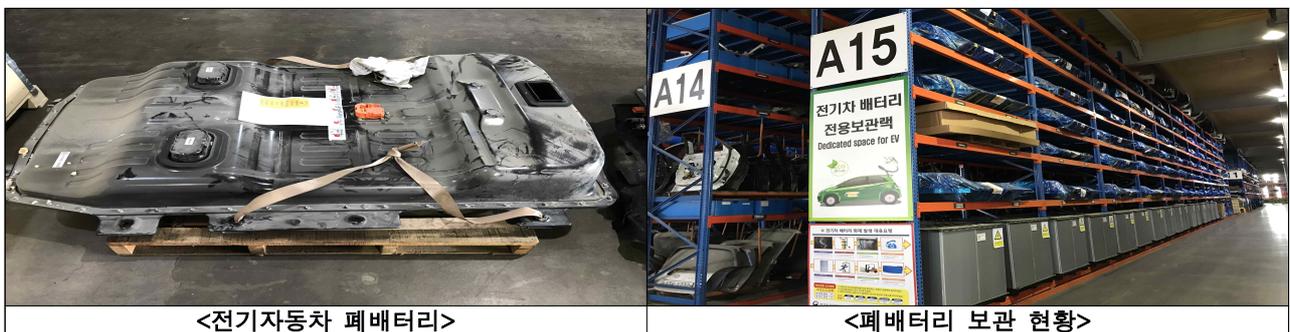
조 치 기 관 환경부

내 용

1. 업무 개요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폐차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사용한 배터리¹⁾(이하 “폐배터리”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및 보관 현황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배터리 보관 현황>

자료: 고양시(폐배터리 보관업체 소재) 제출자료

1)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2016년 0.6만 대 → 2022년 35만 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폐배터리 발생량도 2016년 451대에서 2022년 9,155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환경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배터리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2017년 12월)

또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보조금 환수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 등 사후관리 관리·감독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3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226호)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전기자동차의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는 배터리반납확인증명서를 확인한 후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수거된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반납 대상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반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반납확인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폐배터리 회수 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19. 11. 18.~12. 13.) 중 2013. 5. 24.²⁾ 이후 등록·말

소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표 1] “차량 등록이 말소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회수 현황”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도 남양주시 등 13개³⁾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엔진 반납확인 증명서를 징구하지 않고 자동차 등록말소를 하는 등 반납 대상인 182대의 전기자동차 중 18.1%인 33대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회수되지 않아 소재를 알 수 없는데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는 이에 대한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유독물질⁴⁾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방치되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고, 유실된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3. 의무운행기간을 미충족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환수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에게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0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위의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공고)에 따르면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를 하게 될 경우에 교통사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라도 보험사로부터 받은 차량 보상금이 자부담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2) 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1750호)의 시행일

3) ① 경기도 남양주시, ② 광주광역시 남구, ③ 경기도 고양시, ④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⑤ 인천광역시 강화군, ⑥ 경기도 안성시, ⑦ 경상남도 김해시, ⑧ 경기도 화성시, 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⑩ 부산광역시, ⑪ 충청북도 충주시, ⑫ 경기도 양주시, ⑬ 대전광역시

4)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28호) 제3조에 따르면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유독물질에 해당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조금을 조속히 반납받아야 하고,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19. 11. 18.~12. 13.) 중 2014년 이후에 등록되었고 의무운행기간(2년) 전에 말소되어 보조금 환수 대상인 전기자동차 162대에 대한 보조금 지급·환수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별표 2]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충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대상 현황”에서 보는 것처럼 보조금 환수 대상 79대 중 59.5%인 47대에 지급된 보조금 총 341,069,152원(국비 보조금 222,406,648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데도 관련 지방자치단체⁵⁾와 환경부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를 내버려 두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환경부는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보조금(341,069,152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폐배터리 미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 업무에 대한 실무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폐배터리 회수 업무와 보조금 환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환수 대상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5)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2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말소되어 보조금 환수 대상인 차량에 대해 지급된 구매보조금을 미환수한 ① 제주특별자치도, ② 서울특별시, ③ 충청북도, ④ 대구광역시, ⑤ 전라남도, ⑥ 대전광역시, ⑦ 강원도,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총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별표 1]

차량 등록이 말소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미회수 현황

(단위: 원)

연번	최초 등록일	말소 등록일	차대 번호	말소 등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액
합계(33대)					665,180,000
1	2015. 8. 21.	2016. 3. 31.	-	경기도 남양주시	23,000,000
2	2013. 12. 30.	2016. 4. 27.	-	광주광역시 남구	20,000,000
3	2013. 12. 2.	2016. 7. 29.	-	경기도 고양시	23,000,000
4	2014. 8. 12.	2016. 8. 2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3,000,000
5	2015. 1. 16.	2016. 11. 18.	-	인천광역시 강화군	23,000,000
6	2015. 8. 21.	2016. 12. 14.	-	경기도 안성시	16,500,000
7	2014. 1. 2.	2016. 12. 16.	-	경기도 남양주시	23,000,000
8	2015. 8. 5.	2017. 6. 26.	-	경상남도 김해시	22,000,000
9	2015. 6. 26.	2017. 6. 2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2,000,000
10	2014. 7. 21.	2017. 7. 10.	-	경기도 남양주시	23,000,000
11	2014. 7. 30.	2017. 11. 7.	-	광주광역시 남구	24,000,000
12	2015. 1. 2.	2017. 12. 27.	-	경기도 화성시	20,000,000
13	2015. 8. 5.	2018. 1. 4.	-	경기도 안성시	23,000,000
14	2017. 4. 3.	2018. 1. 29.	-	경상남도 김해시	22,000,000
15	2015. 9. 10.	2018. 1. 3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2,000,000
16	2014. 4. 25.	2018. 2. 21.	-	인천광역시 강화군	22,500,000
17	2015. 9. 1.	2018. 5. 3.	-	경상남도 김해시	15,000,000
18	2014. 6. 30.	2018. 5. 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3,000,000
19	2014. 7. 2.	2018. 6. 18.	-	부산광역시	23,000,000
20	2015. 6. 29.	2018. 7. 6.	-	경기도 남양주시	22,000,000
21	2017. 10. 25.	2018. 8. 9.	-	경기도 남양주시	20,400,000
22	2017. 5. 8.	2018. 8. 23.	-	경기도 화성시	21,000,000
23	2016. 3. 2.	2018. 8. 30.	-	경상남도 김해시	19,000,000
24	2017. 11. 7.	2018. 8. 30.	-	충청북도 충주시	20,000,000
25	2018. 1. 18.	2018. 8. 31.	-	인천광역시 강화군	20,000,000
26	2017. 7. 24.	2018. 9. 6.	-	충청북도 충주시	19,000,000
27	2015. 10. 30.	2018. 10. 12.	-	경기도 안성시	16,500,000
28	2018. 1. 2.	2019. 2. 8.	-	인천광역시 강화군	9,280,000
29	2016. 12. 20.	2019. 2. 12.	-	경기도 양주시	21,000,000
30	2015. 8. 5.	2019. 2. 25.	-	부산광역시	22,000,000
31	2016. 12. 21.	2019. 4. 17.	-	대전광역시	21,000,000
32	2018. 7. 20.	2019. 6. 7.	-	경기도 남양주시	7,000,000
33	2019. 3. 27.	2019. 6. 10.	-	인천광역시 강화군	14,000,0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충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대상 현황

(단위: 원)

연번	최초 등록 지방자치단체	최초 등록일	말소 등록일	차대 번호	국비 보조금 환수 대상 금액	지방비 보조금 환수 대상 금액	환수 대상 금액 합계
합계					222,406,648	118,662,484	341,069,15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5.	2018. 12. 21.	-	2,800,000	1,400,000	4,200,000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5.	2018. 12. 21.	-	2,800,000	1,400,000	4,200,000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5.	2018. 12. 21.	-	2,800,000	1,400,000	4,200,000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5.	2018. 12. 21.	-	2,800,000	1,400,000	4,200,000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5.	2018. 12. 21.	-	2,800,000	1,400,000	4,200,000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5.	2018. 12. 21.	-	2,800,000	1,400,000	4,200,000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5.	2018. 12. 21.	-	2,800,000	1,400,000	4,200,000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5.	2018. 12. 21.	-	2,800,000	1,400,000	4,200,000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5.	2018. 12. 21.	-	2,800,000	1,400,000	4,200,000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5.	2018. 12. 21.	-	2,800,000	1,400,000	4,200,000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6.	2019. 1. 7.	-	2,800,000	1,400,000	4,200,000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6.	2019. 1. 7.	-	2,800,000	1,400,000	4,200,000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6.	2019. 1. 7.	-	2,800,000	1,400,000	4,200,000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6.	2019. 1. 7.	-	2,800,000	1,400,000	4,200,000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6.	2019. 1. 7.	-	2,800,000	1,400,000	4,200,000
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6.	2019. 1. 8.	-	2,800,000	1,400,000	4,200,000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6.	2019. 1. 8.	-	2,800,000	1,400,000	4,200,000
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6.	2019. 1. 8.	-	2,800,000	1,400,000	4,200,000
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6.	2019. 1. 8.	-	2,800,000	1,400,000	4,200,000
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 1. 26.	2019. 1. 8.	-	2,800,000	1,400,000	4,200,000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 5. 18.	2018. 6. 22.	-	7,000,000	2,750,000	9,750,000
22	충청북도 충주시	2018. 10. 2.	2019. 3. 21.	-	2,925,000	3,250,000	6,175,000
23	대구광역시	2017. 3. 24.	2019. 1. 9.	-	4,200,000	1,800,000	6,000,000
24	전라남도 영광군	2017. 5. 8.	2018. 8. 23.	-	3,696,000	1,847,980	5,544,000
25	대구광역시	2017. 6. 27.	2018. 7. 11.	-	7,700,000	3,300,000	11,000,000
26	대구광역시	2017. 6. 29.	2018. 5. 18.	-	7,700,000	3,300,000	11,000,000
27	대전광역시	2017. 7. 24.	2018. 9. 6.	-	7,001,500	2,498,500	9,500,000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7. 7. 28.	2018. 3. 23.	-	6,756,000	3,000,000	9,756,000
29	강원도 강릉시	2018. 3. 23.	2018. 10. 15.	-	2,925,000	2,080,000	5,005,000
30	대전광역시	2018. 6. 19.	2019. 9. 24.	-	4,803,200	2,796,800	7,600,000
31	세종특별자치시	2018. 6. 20.	2019. 6. 12.	-	4,168,420	2,431,580	6,600,000
32	대구광역시	2018. 6. 22.	2018. 9. 10.	-	3,150,000	2,800,000	5,950,000
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8. 7. 17.	2019. 5. 24.	-	5,138,460	3,031,540	8,170,000
34	대구광역시	2018. 8. 10.	2019. 1. 30.	-	7,800,000	3,900,000	11,700,000
35	대전광역시	2018. 8. 17.	2019. 1. 16.	-	7,271,500	4,552,000	11,823,500
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8. 8. 21.	2019. 1. 28.	-	7,800,000	3,900,000	11,700,000
37	대구광역시	2018. 8. 21.	2019. 7. 23.	-	7,145,633	3,572,842	10,718,475
38	대구광역시	2018. 9. 7.	2019. 8. 20.	-	5,144,785	2,572,392	7,717,177
39	대구광역시	2018. 9. 21.	2019. 7. 9.	-	7,200,000	3,600,000	10,800,000
40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 9. 28.	2019. 4. 17.	-	5,576,000	2,324,000	7,900,000
41	경기도 성남시	2018. 10. 10.	2019. 7. 16.	-	7,800,000	3,250,000	11,050,000
42	대전광역시	2018. 10. 11.	2019. 1. 28.	-	7,805,200	4,544,800	12,350,000
43	충청북도 청주시	2018. 10. 18.	2019. 4. 17.	-	6,599,950	5,500,050	12,100,000
44	강원도 강릉시	2018. 10. 31.	2019. 6. 3.	-	7,800,000	4,160,000	11,960,000
45	강원도 강릉시	2018. 11. 6.	2019. 7. 29.	-	7,200,000	3,840,000	11,040,000
46	대구광역시	2018. 11. 20.	2019. 4. 1.	-	7,800,000	3,900,000	11,700,000
47	전라남도 순천시	2019. 3. 11.	2019. 6. 21.	-	6,300,000	6,160,000	12,460,0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엑스포지하차도 개통 지연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대전광역시 ② 국립중앙과학관

조 치 기 관 ① 대전광역시 ② 국립중앙과학관

내 용

1. 업무 개요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라 한다)는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과 엑스포과학공원이 대덕대로에 의해 단절되어 관람객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차량 진·출입 불편 및 교통 혼잡이 유발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국립중앙과학관~엑스포과학공원 간 지하연결통로 조성사업”(사업비: 72억여 원¹⁾)을 추진하였고,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과 대전마케팅공사²⁾(이하 “마케팅공사”라 한다)는 2015. 6. 2.부터 위 지하연결통로(이하 “엑스포지하차도”라 한다)를 대전시로부터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2012. 5. 31. 대전시·과학관·마케팅공사가 체결한 “국립중앙과학관~엑스포과학공원 간 연결통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사진]과 같이 엑스포지하차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대덕대로를 중심으로

1) 국비(국립중앙과학관): 28억 원, 시비(대전광역시): 44.7억 원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에 따라 2011. 11. 1.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로 엑스포지하차도를 나누어 과학관 부분은 과학관이, 엑스포과학공원 부분은 마케팅공사가 유지·관리하는 것³⁾으로 되어 있다.

[사진] 엑스포지하차도 위치 및 현황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협약 제7조에 따르면 협약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관은 협약에 따라 과학관 부분 엑스포지하차도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고, 대전시 등 협약 체결 기관들은 엑스포지하차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관 간 이견으로 시설물 개통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물을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조속하게 시설물을 개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2015. 5. 2. 엑스포지하차도를 준공한 대전시가 같은 해 6. 2. 과학관과 마케팅공사에 시설물을 인계하자, 과학관과 마케팅공사는 엑스포과학공원 쪽 연결 부지에서 추진 중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3) 엑스포지하차도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2017. 4. 18.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65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었으므로 「도로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대전시(유성구)가 그 도로관리청이라 할 수 있으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니더라도 도로의 유지·관리 주체가 되는 것은 가능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4)(이하 “엑스포재창조사업”이라 한다)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엑스포재창조사업의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엑스포지하차도의 개통을 연기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5)하였다.

이후에 엑스포재창조사업 부지 내 일부 기관들이 입주6)하여 엑스포지하차도 미개통으로 인한 시설물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언론에까지 보도7)되자, 대전시의 협조 요청을 받은 마케팅공사는 2018년 12월 과학관에 시설물 사용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등으로 엑스포지하차도의 개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케팅공사로부터 엑스포지하차도의 개통 추진 협조 요청을 받은 과학관은 도로 관리 경험이 없는 과학관에서 엑스포지하차도를 관리할 경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협약과 다르게 대전시 또는 유성구가 시설물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전시는 대전시가 소유한 시설물이 아니고 협약에 따라 과학관과 마케팅공사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엑스포지하차도를 대전시 예산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엑스포지하차도가 위치한 토지를 과학관에서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거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줄 것을 과학관에 요청8)하는 등 양 기관 사이의 이견으로 엑스포지하차도의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과학관 등은 이를 해소할 새로운 협약 체결 등의 논의 없이 그대로 두고 있었다.

4) 기존의 엑스포과학공원을 5개의 구역으로 개발하여 과학·문화·시민휴식의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사업시행자: 대전마케팅공사, 사업비: 1조 2,087억 원)

5) 2015년 대전시로부터 시설물을 인계받은 이후에 구두로 협의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협의 날짜는 확인되지 않음

6) 2017. 9. 25. 스튜디오큐브 개관, 2018. 4. 20.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개원 등으로 기관들이 입주함

7) 2018. 9. 28. 수십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차도를 완공한 후에 3년 이상 미개통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TJB 8시 뉴스에 보도되고, 2018. 11. 1. 지하차도 개통이 지연되어 운전자의 시간 낭비 및 교통사고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전MBC에 보도된 바 있음

8) 이에 대해 과학관은 국유재산인 토지를 기부채납하거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

그 결과, 2019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엑스포지하차도의 개통이 지연되어 다음 사례와 같이 민원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72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물이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⁹⁾되지 못하고 있었다.

민원 발생 사례

- ▶ 2019. 2. 26. 민원인이 출퇴근 시 다른 길을 이용하고 있으나 사고 위험 및 교통 혼잡 시의 불편함이 있어서 엑스포지하차도를 이용하고 싶은데 해당 터널(도로)이 오랫동안 미개통 상태인 이유에 대하여 문의
- 이에 대하여 대전시는 2019. 3. 6. 과학관 등과 협의하여 엑스포지하차도를 조속히 개통하겠다고 회신

관계기관 의견 대전시는 엑스포지하차도를 이관받아 유지·관리하고 과학관이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대전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과학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학관도 엑스포지하차도의 개통 및 사용에 동의하며 대전시가 과학관 부분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전광역시장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대전광역시가 국립중앙과학관~엑스포과학공원 간 지하연결통로를 이관받아 유지·관리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대전광역시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시설물 개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9) 감사원 감사기간(2019. 11. 18.~12. 13.) 중 감사원에서 대전시와 과학관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대전시와 과학관은 대전시가 과학관으로부터 시설물을 이관받아 유지·관리를 하고, 과학관이 그 유지·관리비용을 대전시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마케팅공사는 대전시와 과학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시설물 개통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행정협업과제의 발굴·지원 및 행정협업시스템의 점검·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행정협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이하 “행정협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행정협업과제를 발굴하는 등 행정협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표 1] 행정협업규정상 행정안전부의 행정협업 관련 주요 업무

업무명	근거 조항	내용
행정협업과제 발굴	제43조 제1항	각 기관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에 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
행정협업과제 지원	제44조 제3항, 제4항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 행정협업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
행정협업시스템 구축·운영	제46조의2 제1항	공동작업 및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행정협업시스템(온나라시스템) 구축·운영
행정협업시스템 점검·관리	제46조의3 제2항	각 기관의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태 점검·평가 및 지원

자료: 행정협업규정

2. 행정협업과제 발굴 및 지원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안전부는 행정협업과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6. 4. 26. 행정협업규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등을 신설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다수의 행정기관이 협력할 필요가 있거나 협력을 통해 비용·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 행정기관 간 이견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국민 등을 대상으로 수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행정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행정협업규정 제44조 제3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규정 제44조 제4항에 행정협업과제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행정기관의 협업책임관¹⁾ 간의 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 11월과 2019년 5월 2차례에 걸쳐 중앙행정기관, 시·도²⁾, 시·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협업과제 수요조사를 하였는데, [표 2]와 같이 ‘행정정보의 공유’, ‘행정정보시스템 상호 연계’ 등을 예시로 들면서 원활한 행정협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중재·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제출³⁾하도록 하였다.

1) 행정협업규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임명됨

2) 시·도의 경우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소관 지방공공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요청

3) 2019년에는 협업 우수사례도 제출하도록 요청

[표 2] 행정협업과제의 예시

2018년도	2019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비용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동의 및 의견 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유형 협업) 운전면허 신청 시 신체검사 정보를 공유하여 시력 검사 등 생략 ■ (시스템 통합형 협업) 부처 간에 산재한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 (원스톱서비스 제공 협업) 시군구 인허가 민원 ‘원스톱민원창구’ 전국 확산 ■ (자치단체 간 공동서비스 협업) 지자체 경계 지역에 도서관 공동 설립·운영 ■ (민관 협업)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주차공간 공유 앱을 개발, 주차난 해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별표 1] “각 행정기관의 행정협업과제 제출 현황”과 같이 2018년에는 33개의 기관이 총 57건의 행정협업과제를, 2019년에는 164개의 기관이 총 553건의 행정협업과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행정협업규정 제43조 등의 신설 취지에 부합하고, 2018~2019년에 걸쳐 총 610건의 행정협업과제를 제출한 각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 기관이 제출한 행정협업과제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예시에 부합하는 경우,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중재·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안전부가 관리할 중요 행정협업과제로 선정하고, 기관 간 이견 등이 있는 행정협업과제는 협업책임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18년 총 57건의 행정안전부 지원을 요청하는 행정협업과제를 제출받은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도 없이⁴⁾ 다음 사례와 같이 행정협업

4) “통합 원격 감침시스템 구축”(경기도 부천시), “도시자연공원 내 공립유치원 설립”(울산광역시교육청),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원스톱 변경 신청시스템 구축”(대전지방보훈청) 등 3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2019. 2. 14. 제출기관만을 대상으로 회의를 실시하였으나 행정협업과제로는 미선정

과제 제출기관이 상대 기관에 협업을 우선 요청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과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 각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과제라는 이유 등으로 범정부적인 행정협업과제로 추진할 과제가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관리·지원할 과제를 1건도 선정하지 않았다.

상대 기관에 협업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행정협업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사례

- 대전지방보훈청은 고속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국가유공자·장애인이 차량을 변경할 경우, 보훈관서(국가유공자)·지방자치단체(장애인)와 한국도로공사에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등이 각각 방문하여 단말기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훈관서·지방자치단체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협업과제를 제출
 - 행정안전부는 행정협업과제를 예시하면서 다른 기관의 협의·동의 또는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 대전지방보훈청은 보훈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협업을 요청하기 어려워 한국도로공사에 우선 협업을 요청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기대하고 행정협업과제를 제출하였으나,
 - 행정안전부는 대전지방보훈청이 한국도로공사에 우선 협업을 요청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제출했다는 사유로 행정협업과제로 선정하지 않음

또한, 2019년에도 총 553건의 행정협업과제를 제출받았는데, 관계기관 의견 조희도 없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우수사례로 제출한 과제가 많았고, 법령 개정·예산 투입 등이 필요한 과제라는 이유 등으로 행정안전부가 관리·지원할 과제를 1건도 선정하지 않았다.⁵⁾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9. 11. 18.~12. 13.) 중 행정안전부가 제출받은 행정협업과제를 검토한 결과, 다음 사례와 같이 행정협업과제 수요조사를 하면서 제시한 예시에 부합하거나 행정협업규정 제46조의4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통합형 협업’ 사례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5) 2019년도 행정협업과제 수요조사에서 포상을 위한 협업 우수사례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19. 11. 4. 11개의 협업 우수사례를 선정하면서는 2019. 10. 11. 별도로 협업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포상함으로써 수요조사 때 접수한 협업 우수사례를 활용하지 않음

행정협업과제 예시에 해당하는 제출 과제 사례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 2018년에 제출한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 학교 점유 사유지(현: 구유지)의 변상금 면제 및 무상양여 근거 마련” 과제는 지방교육자치제 시행 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학교용지를 시·도교육청 재산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게 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과제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의 업무협조가 필요한바
 - 행정협업규정 제43조 제2항 제3호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예시 중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해당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018년에 제출한 “공공데이터 공유 또는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과제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승강기 교육 이수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강기 제원 및 검사 이력 정보를 공유하는 과제로
 - 행정협업규정 제43조 제2항 제2호, 제46조의4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예시 중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 법무부가 2019년에 제출한 “등록외국인·체납정보의 기관 간 공유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방지” 과제는 세금·건강보험료 체납정보 보유기관인 행정안전부(지방세), 국세청(국세), 보건복지부(건강보험) 등과 등록외국인 정보 보유기관인 법무부 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체납외국인에 대한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협업규정 제43조 제2항 제1호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예시 중 ‘정보공유형 협업’에 해당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에 제출한 “민간·정부·공공기관 간 자원공유로 대국민 고지·안내문 발송 효율화”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문서 관련 법령 개정과 ▽▽와 ◁▷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전자고지 발송이 필요하므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예시 중 ‘민관협업’에 해당함

또한,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행정협업과제도 [별표 1] “각 행정기관의 행정협업과제 제출 현황”과 같이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 학교 점유 사유지(현: 구유지)의 변상금 면제 및 무상양여 근거 마련”⁶⁾ 등 39건⁷⁾으로 나타났으나 행정안전부(협업정책과)는 소관 부서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제출받은 행정협업과제는 법령 개정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⁸⁾하고 있으면서도 각 행정기관이 제출한 행정협업과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6)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 학교 점유 사유지(현: 구유지)의 변상금 면제 및 무상양여 근거 마련”은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협업을 유도하였음

7) 2018년 33개의 행정기관이 제출한 57건 중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 학교 점유 사유지(현: 구유지)의 변상금 면제 및 무상양여 근거 마련” 등 22건, 2019년 26개 중앙부처가 제출한 168건 중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등 17건

8) “전입신고 시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의 개인주소 자동변경”(2018년 선정)

사유로 선정하지 않는 등 업무의 일관성도 떨어졌다.

한편, 행정협업과제를 제출한 행정기관은 행정협업과제를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의 협조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공유 등이 필요하지만 중앙부처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협업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행정안전부가 지원해준다면 행정협업이 더 적극적으로 유도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각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시스템 활용에 대한 점검·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협업규정 제4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과의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등의 적합한 행정협업과제를 발굴·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협업과제를 행정협업시스템(온나라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협업규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행정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4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중 행정협업시스템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표 3]과 같이 행정협업시스템(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업과제 블로그, 기관 간 메모 보고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표 3] 행정협업시스템의 주요 기능

구분	내용
협업과제 블로그	행정협업과제 추진 시 과제 추진 현황, 자료 공유, 의견 수렴이 편리하게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기관 간 메모 보고	긴급한 현황 보고,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동시에 여러 기관, 여러 사용자에게 메모 형태로 간단하게 전자보고가 가능
공동결재/기안	복수의 기관장이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공동으로 결재할 수 있는 기능
G드라이브	정책·업무자료를 클라우드에 통합·저장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기기로 공유·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장서비스

자료: 행정협업시스템 교육자료 재구성

이러한 규정과 행정협업시스템 운영의 취지는 행정협업시스템을 활용하여 종전의 종이 문서 위주의 자료 관리에서 벗어나 생산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업무의 소통 및 자료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등 일 처리 방식의 혁신으로 행정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행정협업시스템의 행정협업과제 등록 여부 등 각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하여 행정기관이 행정협업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9. 11. 18.~12. 13.) 중 행정협업시스템의 행정협업과제 등록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2018. 6. 26.과 2018. 6. 28. 행정협업시스템 교육을 하면서 [별표 2]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대상 과제 현황” 과 같이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대상 과제를 행정협업과제 블로그 활용 대상 과제(69개의 국정과제, 165개의 실천과제), 문서 공동결재 활용 대상 과제(16개 과제), G드라이브 활용 대상 과제(25개 과제)로 선정하여 통보하고, 2018. 8. 24.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현황 파악 공문 발송, 2018. 10. 19. 활용 부진 기관 대상 영상회의

개최를 하였으나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행정협업시스템상 행정협업과제 블로그에는 43개의 과제(26%), 128건(평균 3건)의 게시물만 등록되어 있었고, 문서 공동결재는 3개의 과제(19%)만 활용하고 있었으며, G드라이브는 1건도 활용하지 않는 등 행정협업시스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기관이 행정협업규정 제41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협업과제도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16개 부처⁹⁾(국방부, 행정안전부 제외¹⁰⁾)의 경우에 31건(평균 2건)이 등록되어 있었고, 등록된 31건의 행정협업과제 중에서도 게시물이 5건 이하인 과제가 26건(전체의 84%)으로 확인되는 등 각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시스템 활용실적이 저조한데도 행정협업시스템의 활용을 독려하거나 촉진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가 미흡하였다.

한편, 행정협업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 정부혁신평가 중 가점 0.5점이 부여되는 ‘협업문화 조성’을 [표 4]와 같이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적(2018년 11월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중앙행정기관들의 활용 실적을 감안한다는 사유로 협업과제 블로그 개설 및 운영 건수, 문서 공동결재 건수, 기관 간 메모 보고 건수, G드라이브 협업문서함 개설 건수 등의 합이 13건 이상이면 ‘탁월’, 9~12건이면 ‘우수’, 5~8건이면 ‘보통’, 4건 이하는 ‘미흡’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9)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10) 국방부는 행정협업시스템(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폐쇄망을 사용하는 기관이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는 행정협업과제 소관 부처라 제외함

[표 4] 협업문화 조성 측정 방법 및 측정 기준(2018년)

구분	배점	내용				
협업문화 조성	가점 0.5점	○ 평가 내용: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여건에 따라 일반 행정망 이용 기관과 폐쇄망 이용기관을 구분하여 활용실적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행정협업시스템 활용실적)</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행정망 이용기관</td> <td>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시스템 활용실적을 합산하여 정량 평가(단, ①은 필수 포함) * 산식: ①(필수)+②+③+④ ① 온-나라 문서시스템에서의 협업과제 블로그 개설 및 운영(1건 이상 자료 등록) 건수 ②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시스템에서의 문서 공동결재 건수 ③ 온-나라 문서시스템에서의 기관 간 메모 보고 건수 ④ G드라이브의 온-나라 과제함 또는 협업문서함 개설 및 운영(1건 이상 자료 공유) 건수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행정협업시스템 활용실적)	일반 행정망 이용기관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시스템 활용실적을 합산하여 정량 평가(단, ①은 필수 포함) * 산식: ①(필수)+②+③+④ ① 온-나라 문서시스템에서의 협업과제 블로그 개설 및 운영(1건 이상 자료 등록) 건수 ②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시스템에서의 문서 공동결재 건수 ③ 온-나라 문서시스템에서의 기관 간 메모 보고 건수 ④ G드라이브의 온-나라 과제함 또는 협업문서함 개설 및 운영(1건 이상 자료 공유) 건수
		구분	내용(행정협업시스템 활용실적)			
일반 행정망 이용기관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시스템 활용실적을 합산하여 정량 평가(단, ①은 필수 포함) * 산식: ①(필수)+②+③+④ ① 온-나라 문서시스템에서의 협업과제 블로그 개설 및 운영(1건 이상 자료 등록) 건수 ②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시스템에서의 문서 공동결재 건수 ③ 온-나라 문서시스템에서의 기관 간 메모 보고 건수 ④ G드라이브의 온-나라 과제함 또는 협업문서함 개설 및 운영(1건 이상 자료 공유) 건수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협업과제 블로그 및 자료를 1건만 등록한 여성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관 간 메모 보고 건수가 기준보다 많아 ‘탁월’로 평가받는 등 [표 5]와 같이 38개의 중앙행정기관(폐쇄망 사용 중앙행정기관 제외) 중 32개의 기관이 ‘탁월’(가점 0.5점)로 평가받고, 5개의 기관이 ‘우수’(가점 0.35점), 1개의 기관이 ‘미흡’(가점 0점)으로 평가받아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져 각 행정기관이 행정협업과제를 등록하여 자료를 올리는 등 행정협업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협업문화 조성(협업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 결과

구분	기관명(활용 실적)
탁월(32개 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우수(5개 기관) ^{주)}	법무부(119건), 국토교통부(12건), 중소벤처기업부(164건), 국민권익위원회(20건), 원자력안전위원회(12건)
미흡(1개 기관)	금융위원회(0건)

주: 활용 실적이 13건 이상이라도 협업과제 블로그에 1건 이상의 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기관은 우수로 평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2항”과 “3항”에서 본 것처럼 행정안전부는 행정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해 중재·지원을 소홀히 하였고, 각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미흡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행정협업과제 발굴 및 지원, 행정협업시스템 활용도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2020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행정협업과제 선정·관리·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협업 성과를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협업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각 행정기관이 행정협업과제를 제출하였는데도 행정협업과제를 선정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거나 각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적이 저조한데도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미흡한 등의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 간 협업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각 행정기관의 행정협업과제 제출 현황

□ 2018년도에 제출한 행정협업과제(57건, 57건 중 행정안전부 관련 22건)

연번	제출 기관	과제명	행정안전부 관련 여부
1	국세청	-	○
2	국토교통부	-	○
3	국가보훈처	-	○
4	국가보훈처	장애인 등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원스톱(One-Stop) 신청 시스템 구축	×
5	대전광역시	-	○
6	대구광역시	-	○
7	대구광역시	-	×
8	대구광역시	-	×
9	전라북도	-	○
10	전라북도	-	×
11	경기도	에너지원(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통합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
12	경기도	-	×
13	경기도	-	×
14	경기도	-	○
15	경기도	-	×
16	경상북도	-	○
17	경상북도	-	×
18	경상북도	-	○
19	인천광역시	-	×
20	부산광역시	-	×
21	부산광역시	-	○
22	부산광역시	-	×
23	울산광역시교육청	세대간 공간나눔, 공간공유를 통한 『공원형 유치원』 추진	×
24	충청남도교육청	-	×
25	광주광역시교육청	-	×
26	광주광역시교육청	-	×
27	광주광역시교육청	-	×
28	광주광역시교육청	-	×
29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 학교 점유 사유지(현:구유지)의 변상금 면제 및 무상양여 근거 마련	○
30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
31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
32	국민건강보험공단	-	○
33	국민연금공단	-	×
34	국민연금공단	-	○
35	한국수자원공사	-	×
36	한국가스공사	-	×

연번	제출 기관	과제명	행정안전부 관련 여부
37	한국마사회	-	×
38	한국언론진흥재단	-	×
39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공공데이터 공유 또는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
40	한국콘텐츠진흥원	-	○
41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	×
42	한국공항공사	-	○
43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	×
44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	×
45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	×
46	한국임업진흥원	-	×
47	한국임업진흥원	-	×
48	한국임업진흥원	-	×
49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	×
50	도로교통공단	-	×
51	한국산업인력공단	-	×
52	한국산업인력공단	-	×
53	한국산업인력공단	-	×
54	한국지역난방공사	-	○
55	한국자산관리공사	-	○
56	한국관광공사	-	○
57	한국관광공사	-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 2019년도에 제출한 행정협업과제(553건, 중앙부처 제출 168건 중 행정안전부 관련 17건)

연번	제출 기관	과제명	행정안전부 관련 여부
1	법무부	등록외국인·체납정보의 기관 간 공유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방지	○
2	고용노동부	-	×
3	고용노동부	-	×
4	고용노동부	-	×
5	고용노동부	-	×
6	고용노동부	-	×
7	고용노동부	-	×
8	고용노동부	-	×
9	고용노동부	-	×
10	고용노동부	-	×
11	고용노동부	-	×
12	고용노동부	-	×
13	고용노동부	-	×
14	고용노동부	-	×

연번	제출 기관	과제명	행정안전부 관련 여부
15	고용노동부	-	×
16	고용노동부	-	×
17	고용노동부	-	×
18	고용노동부	-	×
19	고용노동부	-	×
20	고용노동부	-	×
21	고용노동부	-	×
22	고용노동부	-	×
23	고용노동부	-	×
24	새만금개발청	-	×
25	새만금개발청	-	×
26	새만금개발청	-	×
27	인사혁신처	-	×
28	인사혁신처	-	×
29	인사혁신처	-	×
30	인사혁신처	-	×
31	병무청	-	×
32	병무청	-	○
33	병무청	-	×
34	병무청	-	×
35	병무청	-	×
36	병무청	-	×
37	조달청	-	×
38	조달청	-	×
39	조달청	-	×
40	조달청	-	×
41	조달청	-	○
42	농촌진흥청	-	×
43	농촌진흥청	-	×
44	농촌진흥청	-	×
45	농촌진흥청	-	×
46	농촌진흥청	-	×
47	농촌진흥청	-	×
48	방위사업청	-	×
49	방송통신위원회	-	×
50	방송통신위원회	-	×
51	방송통신위원회	-	×
52	방송통신위원회	-	×
53	국토교통부	-	×
54	국토교통부	-	×
55	국토교통부	-	×
56	국토교통부	-	×
57	국토교통부	-	×
58	국토교통부	-	×

연번	제출 기관	과제명	행정안전부 관련 여부
59	국토교통부	-	×
60	국토교통부	-	×
61	국토교통부	-	×
62	문화재청	-	×
63	문화재청	-	×
64	통계청	-	×
65	통계청	-	×
66	통계청	-	×
67	통계청	-	×
68	통계청	-	×
69	통계청	-	×
70	통계청	-	×
71	국세청	-	○
72	국세청	-	○
73	국세청	-	×
74	국세청	-	×
75	국세청	-	×
76	국세청	-	×
77	국세청	-	×
78	국세청	-	○
79	국세청	-	×
80	국세청	-	○
81	행정안전부	-	○
82	행정안전부	-	×
83	행정안전부	-	×
84	행정안전부	-	○
85	행정안전부	-	○
86	행정안전부	-	○
87	특허청	-	×
88	특허청	-	×
89	특허청	-	×
90	특허청	-	×
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98	기상청	-	×
99	기상청	-	○
100	기상청	-	×

연번	제출 기관	과제명	행정안전부 관련 여부
101	기상청	-	×
102	기상청	-	×
103	기상청	-	×
104	기상청	-	×
105	기상청	-	×
106	기상청	-	×
107	기상청	-	×
108	기상청	-	×
109	관세청	-	×
110	관세청	-	×
111	관세청	-	×
112	관세청	-	×
113	관세청	-	×
114	관세청	-	×
115	관세청	-	×
116	식품의약품안전처	-	×
117	식품의약품안전처	-	×
118	식품의약품안전처	-	×
119	식품의약품안전처	-	×
120	식품의약품안전처	-	×
121	식품의약품안전처	-	×
122	식품의약품안전처	-	×
123	식품의약품안전처	-	×
124	식품의약품안전처	-	×
125	식품의약품안전처	-	×
126	식품의약품안전처	-	×
127	국가보훈처	-	×
128	국가보훈처	-	×
129	환경부	-	○
130	환경부	-	×
131	환경부	-	×
132	환경부	-	×
133	환경부	-	×
134	환경부	-	×
135	환경부	-	×
136	환경부	-	×
137	환경부	-	×
138	경찰청	-	×
139	경찰청	-	○
140	경찰청	-	×
141	경찰청	-	×
142	경찰청	-	×
143	경찰청	-	×
144	경찰청	-	×

연번	제출 기관	과제명	행정안전부 관련 여부
145	경찰청	-	×
146	경찰청	-	×
147	경찰청	-	×
148	경찰청	-	×
149	경찰청	-	×
150	경찰청	-	×
151	경찰청	-	×
152	경찰청	-	×
153	경찰청	-	×
154	경찰청	-	×
155	경찰청	-	×
156	경찰청	-	×
157	경찰청	-	×
158	국가권익위원회	-	○
159	국가권익위원회	-	×
160	국가권익위원회	-	×
161	문화체육관광부	-	×
162	소방청	-	×
163	소방청	-	×
164	소방청	-	×
165	소방청	-	×
166	소방청	-	○
167	통일부	-	×
168	통일부	-	○
169	충청남도	-	-
170	서산시	-	-
171	서산시	-	-
172	서산시	-	-
173	서산시	-	-
174	부여군	-	-
175	부여군	-	-
176	부여군	-	-
177	부여군	-	-
178	서천군	-	-
179	태안군	-	-
180	태안군	-	-
181	대전광역시	-	-
182	서구	-	-
183	서구	-	-
184	서구	-	-
185	대전시설관리공단	-	-
186	대전시설관리공단	-	-
187	대전시설관리공단	-	-
188	대전시설관리공단	-	-

연번	제출 기관	과제명	행정안전부 관련 여부
189	대전시설관리공단	-	-
190	대전시설관리공단	-	-
191	충청북도	-	-
192	충청북도	-	-
193	충청북도	-	-
194	충청북도	-	-
195	옥천군	-	-
196	증평군	-	-
197	진천군	-	-
198	괴산군	-	-
199	광주광역시	-	-
200	광주광역시	-	-
201	광주광역시	-	-
202	광주광역시	-	-
203	김대중컨벤션센터	-	-
204	광주도시철도공사	-	-
205	복구	-	-
206	복구	-	-
207	복구	-	-
208	복구	-	-
209	군산시	-	-
210	정읍시	-	-
211	울산광역시	-	-
212	중구	-	-
213	동구	-	-
214	울주군	-	-
215	울주군	-	-
216	세종특별자치시	-	-
217	세종특별자치시	-	-
218	제주특별자치도	-	-
219	제주특별자치도	-	-
220	제주시	-	-
221	제주시	-	-
222	서귀포시	-	-
223	서귀포시	-	-
224	서귀포시	-	-
225	서귀포시	-	-
226	서귀포시	-	-
227	서귀포시	-	-
228	서귀포시	-	-
229	서귀포시	-	-
230	서귀포시	-	-
231	인천광역시	-	-

연번	제출 기관	과제명	행정안전부 관련 여부
232	남동구	-	-
233	남동구	-	-
234	남동구	-	-
235	남동구	-	-
236	부평구	-	-
237	계양구	-	-
238	옹진군	-	-
239	옹진군	-	-
240	전라남도	-	-
241	전라남도	-	-
242	여수시	-	-
243	여수시	-	-
244	여수시	-	-
245	광양시	-	-
246	곡성군	-	-
247	곡성군	-	-
248	고흥군	-	-
249	고흥군	-	-
250	고흥군	-	-
251	고흥군	-	-
252	해남군	-	-
253	전남복지재단	-	-
254	부산광역시	-	-
255	부산광역시	-	-
256	부산광역시	-	-
257	부산광역시	-	-
258	부산광역시	-	-
259	동구	-	-
260	사하구	-	-
261	사하구	-	-
262	금정구	-	-
263	금정구	-	-
264	금정구	-	-
265	금정구	-	-
266	수영구	-	-
267	사상구	-	-
268	사상구	-	-
269	사상구	-	-
270	기장군	-	-
271	기장군	-	-
272	기장군	-	-
273	기장군	-	-
274	기장군	-	-

연번	제출 기관	과제명	행정안전부 관련 여부
275	기장군	-	-
276	기장군	-	-
277	기장군	-	-
278	기장군	-	-
279	기장군	-	-
280	부산환경공단	-	-
281	부산환경공단	-	-
282	부산환경공단	-	-
283	부산환경공단	-	-
284	부산환경공단	-	-
285	부산환경공단	-	-
286	부산환경공단	-	-
287	부산환경공단	-	-
288	부산환경공단	-	-
289	부산환경공단	-	-
290	부산환경공단	-	-
291	부산환경공단	-	-
292	부산관광공사	-	-
293	부산교통공사	-	-
294	부산교통공사	-	-
295	부산교통공사	-	-
296	부산교통공사	-	-
297	부산소방재난본부	-	-
298	안동시	-	-
299	안동시	-	-
300	안동시	-	-
301	안동시	-	-
302	안동시	-	-
303	경산시	-	-
304	의성군	-	-
305	군위군	-	-
306	예천군	-	-
307	청송군	-	-
308	청송군	-	-
309	청송군	-	-
310	대구광역시	-	-
311	대구광역시	-	-
312	동구	-	-
313	동구	-	-
314	동구	-	-
315	남구	-	-
316	남구	-	-
317	수성구	-	-

연번	제출 기관	과제명	행정안전부 관련 여부
318	달성군	-	-
319	대구도시철도공사	-	-
320	대구도시철도공사	-	-
321	대구시설공단	-	-
322	대구시설공단	-	-
323	수원시	-	-
324	수원시	-	-
325	수원시	-	-
326	용인시	-	-
327	부천시	-	-
328	평택시	-	-
329	평택시	-	-
330	평택시	-	-
331	오산시	-	-
332	동두천시	-	-
333	연천군	-	-
334	연천군	-	-
335	연천군	-	-
336	경기도시공사	-	-
337	경기도시공사	-	-
338	경상남도	-	-
339	경상남도	-	-
340	경상남도	-	-
341	창원시	-	-
342	창원시	-	-
343	밀양시	-	-
344	밀양시	-	-
345	거제시	-	-
346	거제시	-	-
347	거제시	-	-
348	의령군	-	-
349	함안군	-	-
350	함안군	-	-
351	창녕군	-	-
352	창녕군	-	-
353	창녕군	-	-
354	남해군	-	-
355	남해군	-	-
356	산청군	-	-
357	산청군	-	-
358	산청군	-	-
359	산청군	-	-
360	산청군	-	-
361	거창군	-	-

연번	제출 기관	과제명	행정안전부 관련 여부
362	합천군	-	-
363	전라남도교육청	-	-
364	전라남도교육청	-	-
365	전라남도교육청	-	-
366	경상남도교육청	-	-
367	경상남도교육청	-	-
368	경상남도교육청	-	-
369	서울특별시교육청	-	-
370	서울특별시교육청	-	-
371	서울특별시교육청	-	-
372	서울특별시교육청	-	-
373	서울특별시교육청	-	-
374	대전광역시교육청	-	-
375	경기도교육청	-	-
376	경기도교육청	-	-
377	한국장학재단	-	-
378	한국장학재단	-	-
379	한국장학재단	-	-
380	시청자미디어재단	-	-
381	한국수자원공사	-	-
382	한국수자원공사	-	-
383	한국수자원공사	-	-
384	한국수자원공사	-	-
385	한국수자원공사	-	-
386	한국수자원공사	-	-
387	한국수자원공사	-	-
388	한국수자원공사	-	-
389	한국수자원공사	-	-
390	한국수자원공사	-	-
391	도로교통공단	-	-
392	도로교통공단	-	-
393	도로교통공단	-	-
394	도로교통공단	-	-
395	도로교통공단	-	-
396	도로교통공단	-	-
397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
398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
399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
400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
401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	-

연번	제출 기관	과제명	행정안전부 관련 여부
402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	-
403	한국관광공사	-	-
404	한국관광공사	-	-
405	한국관광공사	-	-
406	한국환경공단	-	-
407	한국환경공단	-	-
408	한국환경공단	-	-
409	한국환경공단	-	-
410	한국환경공단	-	-
411	한국환경공단	-	-
412	한국환경공단	-	-
413	한국환경공단	-	-
414	한국환경공단	-	-
415	한국환경공단	-	-
416	한국환경공단	-	-
417	영화진흥위원회	-	-
418	예금보험공사	-	-
419	예금보험공사	-	-
420	예금보험공사	-	-
421	예금보험공사	-	-
422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
423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
424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
425	한국가스안전공사	-	-
426	한국전기안전공사	-	-
427	한국전기안전공사	-	-
428	한국전기안전공사	-	-
429	한국전기안전공사	-	-
430	한국전기안전공사	-	-
431	한국전기안전공사	-	-
432	한국임업진흥원	-	-
433	한국남부발전	-	-
434	한국남부발전	-	-
435	한국남부발전	-	-
436	한국남부발전	-	-
437	한국남부발전	-	-
438	한국남부발전	-	-
439	한국남부발전	-	-
440	한국남부발전	-	-

연번	제출 기관	과제명	행정안전부 관련 여부
441	한국특허전략 개발원	-	-
442	한국특허전략 개발원	-	-
443	한국특허전략 개발원	-	-
444	한국특허전략 개발원	-	-
445	한국철도시설공단	-	-
446	한국철도시설공단	-	-
447	한국철도시설공단	-	-
448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	-
449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	-
450	한국조폐공사	-	-
451	한국석유공사	-	-
452	한국시설안전공단	-	-
453	부산항만공사	-	-
454	부산항만공사	-	-
455	한국남동발전	-	-
456	한국남동발전	-	-
457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
458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
459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
460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
461	한국국토정보공사	-	-
462	한국지역난방공사	-	-
463	한국지역난방공사	-	-
464	한국지역난방공사	-	-
465	한국지역난방공사	-	-
466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	-
467	한국소비자원	-	-
468	한국소비자원	-	-
469	한국소비자원	-	-
470	한국소비자원	-	-
471	한국소비자원	-	-
472	한국소비자원	-	-
473	한국소비자원	-	-
474	한국소비자원	-	-
475	한국소비자원	-	-
476	한국소비자원	-	-

연번	제출 기관	과제명	행정안전부 관련 여부
477	한국소비자원	-	-
478	한국소비자원	-	-
479	한국소비자원	-	-
480	한국소비자원	-	-
481	한국자산관리공사	-	-
482	한국자산관리공사	-	-
483	한국자산관리공사	-	-
484	한국자산관리공사	-	-
485	한국자산관리공사	-	-
486	한국자산관리공사	-	-
487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정부·공공기관 간 자원공유로 대국민 고지·안내문 발송 효율화	-
488	국민건강보험공단	-	-
489	국민건강보험공단	-	-
490	국민건강보험공단	-	-
491	국민건강보험공단	-	-
492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	-
493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	-
494	한국수력원자력	-	-
495	한국수력원자력	-	-
496	한국공항공사	-	-
497	한국공항공사	-	-
498	한국교통안전공단	-	-
499	한국교통안전공단	-	-
500	한국광해관리공단	-	-
501	한국광해관리공단	-	-
502	한국광해관리공단	-	-
503	한국광해관리공단	-	-
504	한국광해관리공단	-	-
505	한국광해관리공단	-	-
506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	-	-
507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	-	-
508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	-	-
509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
510	국민연금공단	-	-
511	국민연금공단	-	-
512	국민연금공단	-	-
513	국민연금공단	-	-
514	국민연금공단	-	-
515	국민연금공단	-	-
516	국민연금공단	-	-

연번	제출 기관	과제명	행정안전부 관련 여부
517	국민연금공단	-	-
518	국민연금공단	-	-
519	국립공원공단	-	-
520	국립공원공단	-	-
521	독립기념관	-	-
522	독립기념관	-	-
523	독립기념관	-	-
524	독립기념관	-	-
525	주택도시보증공사	-	-
526	주택도시보증공사	-	-
527	주택도시보증공사	-	-
528	주택도시보증공사	-	-
529	주택도시보증공사	-	-
530	주택도시보증공사	-	-
531	주택도시보증공사	-	-
532	주택도시보증공사	-	-
533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	-
534	한국감정원	-	-
535	한국철도공사	-	-
536	한국철도공사	-	-
537	한국철도공사	-	-
538	한국철도공사	-	-
539	한국철도공사	-	-
540	한국철도공사	-	-
541	한국철도공사	-	-
542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	-
543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	-
544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	-
545	한국전력공사	-	-
546	한국전력공사	-	-
547	한국전력기술	-	-
548	한국농어촌공사	-	-
549	한국국제협력단	-	-
550	한국국제협력단	-	-
551	한국국제협력단	-	-
552	한국국제협력단	-	-
553	한국국제협력단	-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대상 과제 현황

□ 행정협업과제 블로그 활용 대상 과제(165개 과제 중 43개 등록)

연번	국정과제(협업과제) 실천과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등록 여부
1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행정안전부	○
2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3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4	-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
5	-	고용노동부	교육부	○
6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
7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8	-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중소기업부, 행정안전부	×
9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10	-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11	-	고용노동부	교육부	×
12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
13	-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14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
15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부	×
16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
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
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
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
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
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
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

연번	국정과제(협업과제) 실천과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등록 여부
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26	-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
27	-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28	-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29	-	교육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
30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1	-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
32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3	-	교육부	환경부	×
34	-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
35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36	-	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	×
37	-	국무조정실	법제처	×
38	-	국무조정실	법무부, 법제처,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9	-	국무조정실	법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0	-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
41	-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42	-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43	-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
44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45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
46	-	국가권익위원회	법무부	×
47	-	금융위원회	법무부	×
48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
49	-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
50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

연번	국정과제(협업과제) 실천과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등록 여부
51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52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53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54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55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56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
57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
58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
59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
60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
61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
62	-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
63	-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
64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
65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66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67	-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
68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
69	-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
70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1	-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2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
73	-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74	-	법무부	대검찰청	×
75	-	병무청	외교부, 산림청	○
76	-	국가보훈처	국방부	×
77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
78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79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80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
81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
82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83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84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
85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86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

연번	국정과제(협업과제) 실천과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등록 여부
87	-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
88	-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
89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90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
91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92	-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
93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94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95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
96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
97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98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환경부	○
99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100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101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기획재정부	×
102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
103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
104	-	소방청	산림청	×
105	-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
106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
107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
108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109	-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
110	-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해경청, 행정안전부	×
111	-	여성가족부	교육부	×
112	-	여성가족부	법무부	×
113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
114	-	외교부	국정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115	-	외교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
116	-	외교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병무청,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번	국정과제(협업과제) 실천과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등록 여부
117	-	외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
118	-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119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
120	-	인사혁신처	국가권익위원회	×
121	-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
122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
123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
124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
125	-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
126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
127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
128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9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
130	-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
131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
132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
133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
134	-	통일부	외교부, 산림청	×
135	-	통일부	외교부, 산림청	×
136	-	통일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	×
137	-	통일부	외교부, 산림청	×
138	-	통일부	외교부	×
139	-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
140	-	통일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
141	-	통일부	법무부	×
142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
143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
144	-	통일부	교육부	×
145	-	해양수산부	해경청	○
146	-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
147	-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48	-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
149	-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
150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151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152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연번	국정과제(협업과제) 실천과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등록 여부
153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154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155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156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57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58	-	환경부	고용노동부	○
159	-	환경부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160	-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61	-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
162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163	-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164	-	환경부	국토교통부	○
165	-	환경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 문서 공동결재 활용 대상 과제(16개 과제 중 3개 과제 활용)

연번	국정과제(협업과제) 실천과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활용 여부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2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3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4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5	-	소방청	산림청	○
6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
7	-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8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
9	-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
10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
11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
13	-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
14	-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5	-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
16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 G드라이브 활용 대상 과제(25개 과제 중 활용 과제 전무)

연번	국정 과제(협업 과제)	실천과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활용 여부
1	-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2	-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
3	-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4	-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5	-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
6	-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
7	-	-	국무조정실	법제처	×
8	-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
9	-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
10	-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11	-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12	-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
13	-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14	-	-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
15	-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
16	-	-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
17	-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
18	-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
19	-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
20	-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
21	-	-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
22	-	-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
23	-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24	-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25	-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